



통권 490호

2024 | 06

가정상담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소는 지난 5월 23일 파주시 금촌역에서 「경기도주거복지상담협의체」와 함께 주택문제 전반 및 가정법률에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였다. (관련 기사 35면)



본소에서는 가정문제의 예방과 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김병후 원장(정신과전문의, 본소 이사)의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를 진행중이며, 지난 5월 30일에는 ‘마음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본소 8층 강당에서 두 번째 강의가 진행되었다. (관련 기사 35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반 : 반복되는
부 : 부정부패!
패 : 패가망신의 지름길



4 · 이달의 메시지

6 · 특별기고 | 유류분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11 · 특집 ①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3년도 상담통계 - 다문화가정

21 · 특집 ②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3년도 소송구조 분석 - 가정위탁

29 · 가정폭력상담실

31 · 어떻게 할까요

33 · 결혼과 인생(238) 영화 이야기

환상의 빛 _ 김용언

34 · 좋은 책

컬트

35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37 · 소송구조

* 원고 넘쳐 특별기획과 기획연재는 쉬어 갑니다.



진정한 성찰이 필요한 때 - 폭력으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구해야

개인과 가정, 사회와 정부 모두 마음을 모아 (1)

십여 년 전에 “안전이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헤어지려고 할 때 폭행, 감금, 스토킹, 협박 등을 포함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이별 요령”이라는 경찰 보도자료가 나왔고 여기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안전한 이별이 못한 이별이 많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는 해도 이 보도자료는 이별 범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린다는 비판을 받으며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말이 쓰이는 경우를 봅니다. 무엇보다 말 그대로 ‘안전이별’을 하지 못해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귀다 헤어질 수도 있는 일상의 일들이 어느새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된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갈등 관계도 아니고 그저 우연히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을 뿐인데 잔혹한 ‘묻지마 범죄’의 무차별적인 희생양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를 지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미소지니’로 표현되면서 많은 논쟁을 불러왔던 강남역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2022년에는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그리고 2023년에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남자친구에게 심각한 장애를 입힌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바로 얼마 전에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옥상으로 불러 살해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2020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의 충격도 여전한데 얼마 전에는 이른바 ‘서울대판 n번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이와 비슷한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존속살인, 가족 살해 후 자살, 가정폭력에서 비롯된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살인 등 언론에 드러난 것 만해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때 저는 미국의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의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류학에서 후천적인 문화,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연구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 구분도 특정 사회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점을 지적하면서, 모든 사회 현상은 그 사회의 역사 문화적 맥락에서 분석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그가 문명에 관해 남긴 일화입니다. 구체적인 출처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녀가 이런 주제로 언급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녀는 인류 문명의 시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해 '부러졌다가 회복된 흔적이 있는 원시인의 다리뼈'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원시의 야생에서 뼈가 부러질 정도의 큰 부상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회복된 흔적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보살펴 주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다친 사람을 보살펴 주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 주는 동정심, 인내심 등이 문명을 알리는 최초의 신호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우리 사회뿐 아니라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오늘날 인류는 진정 문명의 세계에 있는지 깊이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를 과연 문명인이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발전해 왔는가, 진정 인간이란 무엇인가 등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는 요즈음입니다.

가정문제 전문 상담기관으로써 가정문제를 최일선에 서 들여다보고 그 해결책과 대안 마련을 위해 법과 관습, 제도와 의식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 온 상담소에서 보면 현재 우리의 상황과 일부 국민의 의식이 오히려 퇴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양성평등과 부부평등에 입각하여 동성동본 금혼 규정의 철폐라든가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면 유교적 이념에 기반한 가부장제 가치관을 뺏속 깊이 간직한 많은 이들은 반감을 표하기도 하고 나아가 적대감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들은 토론과 교육과 자신들의 부모, 어머니와 아내, 자녀의 삶을 생각하며 점진적으로 우리의 주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성별 갈등, 세대 갈등에서는 이렇듯 서로의 처지를 바꾸어 보고 이해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없는 현실을 보면서 저는 무력감을 넘어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최근의 갈등 양상이나 범위 그 정도가 더 나쁜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문명이 발전하며 이와 관련한 성범죄를 비롯해 다양한 범죄들은 사회적으로 이를 막기 위한 노력보다 훨씬 앞서 진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인공지능 등의 발전과 관련한 윤리와 도덕, 규범의 사회적 합의 등은 아직 이를 따라 잡기에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정폭력을 포함해 사회 전반의 폭력적인 상황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의 이면에는 이런 문제적 상황이 가정, 가족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을 모색할 집단적 지성과 의지가 과연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람 하나를 제대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가정과 지역 공동체, 정부와 국가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란 현재 사회를 제대로 운영하고 다음 세대를 바르게 키워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국가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이 모든 문제를 관장할 수 있는 행정부서가 필요하고 그곳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입안, 수립,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 사회 여성·가족정책의 기획과 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 향상 그리고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가 바로 그곳입니다. 설립 당시 그 명칭부터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이 부서는 지금 폐지 논란에 휩싸여 몇 년째 정책부서로서 제대로 의무 역할 책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어떻게 가족정책을 논할 수 있으며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 향상 나아가 청소년 문제를 비롯해 점점 다양화되고 잔혹해지는 가정 내외에서의 폭력 문제를 위한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당국을 비롯한 우리 사회 그리고 전문부서가 힘을 합쳐 이 문제와 관련 깊은 성찰과 문제의식을 갖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가족의 현실이 곧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김 상 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들어가는 말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민법¹⁾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유류분제도 중에서 몇 가지 조항에 대하여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조항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로 규정한 제1112조 제4호,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제1118조이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위 규정들의 어떤 점이 문제가 되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개정시안)을 제시해 본다.

II. 유류분제도의 존재 이유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위 규정들의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류분제도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서 확보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부 또는 모)이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고 상속인(자녀)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는 유언을 한 경우에도 상속인인 자녀는 유류분으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 A

가 전 재산 10억을 B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한 경우에도 자녀 C는 5억을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피상속인 A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B사회복지법인이 기부받는 재산의 액수는 5억에 그친다.

이와 같이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제도이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당화되어 왔다.

첫째,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으로 상속인을 부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는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상속재산이 남겨질 수 있도록 제도로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개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그 밖의 가족의 공동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피상속인이 그 의사에 따라 상속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가족구성원을 상속에서 배제한 경우에도 이들에게 일정한 비율의 상속재산을 보장함으로써 재산형성의 기여에 따른 청산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피상속인과 가까운 친족관계에 있던 상속인에게는 일정한 비율의 상속재산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상속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은 가족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상호 간에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였을 것으로 일반적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가족 간의 유대관계에 기초하여 유류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1) 이하에서 민법 조문은 별도로 범명을 표시하지 않는다.

III.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로 규정한 제1112조 제4호의 문제점

위에서 본 유류분제도의 존재 이유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은 찾기 어렵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하나의 사례를 들어 본다: 피상속인 A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모든 30억의 재산을 사망하기 6개월 전에 X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였다. A의 유족으로는 형제자매인 B와 C가 있을 뿐인데, 생전에 A와 아무런 교류가 없었다. B와 C는 X사회복지법인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각각 5억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결과는 X사회복지법인에 전 재산을 기부한 A의 의사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류분제도의 존재 이유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유류분제도가 인정되는 첫 번째 이유는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으로 상속인을 부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A가 생전에 형제자매인 B와 C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없었다는 점(제974조 제3호)에 비추어 보면, B와 C가 A의 상속재산으로 부양을 받아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렵다(더구나 B와 C가 자신의 소득과 재산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부양의 필요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유류분제도가 인정되는 두 번째 이유는 상속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에게 그에 따른 청산분배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현대사회에서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위의 예에서도 A의 생전에 A와 B, C는 거의 교류가 없었으며, B와 C가 A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은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의 청산으로 B와 C에게 유류분을 보장해야 할 이유는 없다. 유류분제도가 인정되는 세 번째 이유는 피상속인과 가까운 친족관계에 있던 상속인에게는 일정한 비율의 상속재산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형제자매 사이의 관계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정한 재산을 강제로 나누어주어야 할 만큼 친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일 그 정도로 형제자매 간에 친밀한 관계가 존재했다면 피상속인이 스스로 형제자매에게 어느 정도의 상속재산을 남길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위의 예에서와 같이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형제자매에게 주지 않고, 다른 사람(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때에는 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경우에 피상속인의 의사

에 반하여 그의 재산 중 일정 비율을 강제로 형제자매에게 분배하게 하는 것은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에서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이탈하여 피상속인 및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수증자 및 수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제1112조 제4호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입법례는 찾기 어렵다. 예를 들어 일본민법은 직계존속과 자녀, 배우자에 대해서만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으며(일본민법 제1042조), 독일은 부모와 직계비속, 배우자(생활동반자 포함)에 한하여 유류분이 인정된다(독일민법 제2303조, 독일 생활동반자에 관한 법률 제10조). 오스트리아 역시 배우자(등록동반자 포함)와 직계비속에 대해서만 유류분이 인정된다(오스트리아민법 제757조). 스위스는 1984년 법개정을 통하여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삭제하였으며, 현재는 배우자(등록동반자 포함), 직계비속에 대해서만 유류분이 인정되고 있다(스위스민법 제470조).

IV.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제1112조 제1호 - 제3호의 문제점

제1112조 제1호 - 제3호는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이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유류분권도 없다) 피상속인이 생전증여나 유증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 A에게 배우자 B와 자녀 C가 있다면, A가 20억 원에 달하는 전 재산을 공익법인에 유증한 경우에도 B와 C는 각각 6억(법정상속분 12억의 2분의 1), 4억(법정상속분 8억의 2분의 1) 상당의 재산에 대해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제1112조가 이와 같이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다.

제1112조와 유류분에 관한 다른 민법 규정(제1113조 - 제1118조)에 따르면 유류분권리자에게 상속결격사유(제1004조,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살해한 경우,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등)가 없는 한, 위와 같이 정해진 유류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C가 A의 생전에 지속적으로 A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였거나, A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을 때 장기간 교류를 단절하고 방임했다고 해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요컨대 피상속인과 유류분권리자 사이에 최소한의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에도 유류분권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본 유류분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볼 때 정당화되기 어려운 것이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과 유류분권리자 사이에 최소한의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존재했을 것을 전제로 하는데, 위의 사례에서 A와 C의 관계는 법적으로는 친자관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파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유류분제도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일정한 신분(예컨대 피상속인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점에서 현행 유류분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일정한 사유(예컨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 학대한 경우 등)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민법 제1112조의 경우 ……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제1호부터 제3호)은 불합리하고 자의적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불합치 결정.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력상실).

유류분상실제도는 유럽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제도로써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증여 또는 유언을 통해서 특정 상속인을 상속에서 배제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유언으로 유류분마저 박탈함으로써 상속재산으로부터 아무런 이익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르면, 위의 예에서 피상속인 A는 전 재산을 공익법인에 유증하면서 자신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C의 유류분을 박탈한다는 유언을 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C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유류분상실사유가 없는 배우자 B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상실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민법 제2333조 제1항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언으로 자녀(직계비속)의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다.²⁾ i) 자녀(직계비속)가 피상속인, 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과 이와 유사하게 가까운 관계에 있던 사람(계부모, 계자녀, 위탁아동 등)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경우(살해의 의도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행위로 나타나면 족하다), ii) 직계비속이 위에 열거된 사람에 대해서 범죄(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 또는 중대한 비행(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무시하고 부모에게 모욕적인 행위를 한 경우)을 저지른 경우,³⁾ iii)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법률상의 부양의무를 악의적으로 위반한 경우,⁴⁾ iv) 직계비속이 고의의 범죄로 인하여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없는 자유형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그 이유로 피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직계비속이 상속재산을 받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직계비속이 이와 유사하게 중대한 고의의 범죄로 인하여 정신병원이나 중독치료소에 수용되도록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오스트리아민법 제770조 제5호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가족법상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를 유류분상실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발생하는 가족법상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예를 들어 노

2) 그리고 제2333조 제2항에 의해서 이 규정은 부모와 배우자에게 준용된다.

3)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상속인 등의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서 형사소추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유언으로 유류분을 박탈하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Burandt/Rojahn/Horn, 4. Aufl. 2022, BGB § 2333 Rn. 14.

4)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가족 간의 유대관계에 기초한 의무의 이행을 스스로 저버렸다면, 부모의 사망 후 가족 간의 유대관계에 근거한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취지이다.

부모가 요양과 간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을 때, 자녀가 이를 외면하고 필요한 조력을 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⁵⁾ 부부간에 인정되는 가족법상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 규정 역시 유류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유류분권리자 사이에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존재해야 함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스위스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피상속인 또는 그의 친족에 대하여 가족법상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그 상속인의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다(제477조 제2호). 가족법상의 의무에는 친족간의 부양 의무(제328조),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돕고, 배려하고, 존중할 의무(제272조), 부부간의 부양, 협조의무(제159조, 제163조, 제164조) 등이 포함된다.

체코민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직계비속⁶⁾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나 피상속인에 대하여 직계비속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관심을 장기간 보이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다(제1646조).

헝가리민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법률상의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를 유류분상실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제663조), 폴란드민법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가족법상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를 유류분상실사유로 규정한다(제1008조). 이외에도 슬로베니아상속법(제42조 이하), 스페인민법(제853조), 그리스민법(제1839조 이하),⁷⁾ 노르웨이상속법(제55조),⁸⁾ 핀란드상속법(제15장 제4조) 등이 유류분상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나아가 이미 유류분의 상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나

라들에서 특히 자녀의 유류분과 관련하여 그 사유를 확대 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V.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제1118조의 문제점

현행 민법에서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관계가 없다.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모순을 두 개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사례 1: 피상속인 A에게 자녀 B와 C가 있는데, A는 유언을 하지 않았으며 시가 5억 상당의 주택을 남겼다. B는 A의 생전에 20년간 A의 부양, 요양, 간호를 전담하고 A의 채무 3억까지 대신 변제하였으나, C는 그 동안 A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A의 사망 후 C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B는 법원에 기여분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상속재산 전부를 B의 기여분으로 인정하였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은 전부 B에게 귀속하고, C는 이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기여분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례 2: 위와 동일한 사례에서 A가 B의 기여에 대한 보답으로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생전에 B에게 증여한 경우를 상정해 본다. A가 사망하자 C는 B에 대하여 유류분(상속재산의 4분의 1)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이런 경우 현행법상 B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C의 유류분(1억 2천 5백만원)을 반환하여야 한다.⁹⁾

사례 1과 사례 2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례이지만, 결과

5) 장기간 이유 없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모든 접촉을 거부한 경우도 유류분상실사유가 될 수 있다.

6) 체코민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만이 유류분권리자가 된다.

7) 그리스민법 제1839조 이하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일정한 법정사유(예를 들어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법률상 부담하는 부양의무를 악의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1840조 제4호),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사망시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었던 경우(제1842조))가 있는 경우에 유언으로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다.

8) 노르웨이상속법 제55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상속인이 피상속인, 상속인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직계비속에 범죄행위를 한 경우) 유언으로 그 상속인의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다. 유류분박탈의 유언은 법무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대판 1994. 10. 14. 94다8334; 다만 최근에 판례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전개한 바 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증여나 유증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여나 유증은 예외적으로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판 2022. 3. 17. 2021다230083, 2021다230090).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판결만으로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여분과 유류분의 단절로 인하여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불합리한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생긴다. 사례 2에서와 같이 기여상속인 B가 피상속인 A로부터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생전증여(또는 유증)를 받았다면, 다른 상속인 C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의 4분의 1을 반환하여야 한다. 반면에 사례 1에서처럼 피상속인 A가 기여상속인 B에게 생전증여(또는 유증)를 하지 않아서 기여상속인 B가 기여분을 청구하여 상속재산 전부가 기여분으로 인정되었다면, 다른 상속인 C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기여상속인 B는 상속재산 전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례 2에서 피상속인 A는 생전에 상속인 B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였는데, 결과에 있어서는 사례 1에서와 같이 생전에 증여를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상속인 B에게 유리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결과를 막으려면 사례 2에서 상속인 C가 기여상속인 B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 B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B가 기여분을 주장하여 상속재산 전부가 기여분으로 인정되면, 기여분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C의 유류분반환청구는 기각되고, 사례 1에서와 같이 B는 상속재산 전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결과적으로 사례 1과 사례 2는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둘 것을 제시하였다: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 때문에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가 단절되고 이로 인하여 기여상속인이 정당한 대가로 받은 기여분 성격의 증여까지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됨으로써, 기여상속인과 비기여상속인 간의 실질적 형평과 연대가 무너지고, 기여상속인에게 보상을 하려고 하였던 피상속인의 의사가 부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제1118조가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를 단절하고 있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고 자의적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이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헌법불합치 결정.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력상실).

VI. 개정시안의 제시

위에서 살펴본 유류분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정시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제1112조의2(유류분의 상실) ① 피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유언으로 상속인의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다.

1. 상속인이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피상속인에 대한 경제적, 신체적 부양의무¹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¹¹⁾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류분을 상실한 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본다.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준용한다.¹²⁾

10) 신체적 부양은 돌봄, 요양, 간호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11) 예를 들어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350조(공갈)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독일민법 제2333조 제1항 제2호(각주 3) 참조.

12) 제1118조 대신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개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 - ③ 현행 유지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 또는 제1115조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특집 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3년도 상담 통계 | 다문화 가정

상담소 다문화 상담 건수, 실제 서울지역 다문화 이혼 건수보다 더 많아 한국인 남편 상담이 외국인 아내에 비해 더 많아지는 추세 여전해

상담 비율,

한국인 남편 54.6%, 외국인 아내 45.4%

한국인 남편의 상담이

외국인 아내의 상담보다 1.2배 더 많아

연령대,

한국인 남편은 50대, 외국인 아내는 30대가 가장 많아

남성 연상 중 17세~30세 차이 29.5%

(일반가정 이혼상담 6.0%)

재혼 비율 35.2%(일반가정 이혼상담 16.2%)

외국인 아내의 86.2%,

한국인 남편의 57.2% 안정적 수입 없거나 미상

외국인 아내의 78.1%,

한국인 남편의 74.1% 보유재산 없거나 미상

혼인신고 후 30.5% 별거 중

한국인 남편은

아내의 가출, 기타, 아내의 외도 순으로 상담

외국인 아내는

남편의 폭력, 남편의 가출, 기타 순으로 상담

한국인 남편

- 외국인 아내의 계속된 외도와 사치, 낭비 등을 감당할 수 없어!

● 아내의 외도, 사치·낭비 등을 이유로 갈등을 겪는 사례(내담자 40대 한국 남성)

업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결혼하였다. 나에게 장애가 있으나 생활에 큰 지장은 없고 소득도 높다. 문제는 상대가 계속해서 여러 명과 외도를 하였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남자를 만나기도 하였다. 상대는 내가 준 돈을 모두 옷이나 신발 등 본인의 사치를 위해 사용하였고, 한 번 입은 옷은 절대로 다시 입지 않고 모두 우즈베키스탄으로 보냈다. 어머니는 내 결혼생활을 유지시키고자 서울에 집도 사주고 상대방이 돈을 요구하면 그 돈도 모두 지원해 주었다. 상대방이 외도를 하더라도 내게 잘하고 가정에 소홀하지 않았더라면 참았을 것이나 이제 더 이상은 의미가 없다.

외국인 아내

- 정신적 질병 있는 한국인 남편에게 수시로 폭행 당해!

● **남편의 폭력, 의처증 등을 이유로 갈등을 겪는 사례(내담자 30대 캄보디아 여성)**

나는 캄보디아에서 왔고 한국 남성과 혼인해 아이 둘을 낳았다. 그런데 남편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아 몇 달 전부터는 정신과 약도 복용한다. 밤에 혼잣말을 계속 해서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다. 폭언과 폭행도 심해 올해 들어서만 네 번 정도 남편에게 맞았다. 의처증도 있어 내가 나갔다면 오면 내 핸드폰을 뒤진다. 내가 핸드폰을 빼앗으려 하자 내 뺨과 배를 주먹으로 쳤다. 심지어 친정아버지가 잠시 한국에 다녀가셨는데 아버지 앞에서도 내게 칼을 집어던졌고 아이들도 때렸다. 시누이까지 가세해 나를 때리기도 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이혼 후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오고 싶다.

한국인 아내

- 남편의 가출 및 알콜중독으로 더 이상은 힘들어!

● **남편의 가출 및 알콜중독 등을 이유로 갈등을 겪는 사례(내담자 40대 한국 여성)**

남편은 미국인으로 결혼 당시에는 남편에게 알콜의존증이 있는 줄 몰랐다. 살면서 점점 증상이 나타났고, 술을 마시고 며칠씩 깨어나지 못하기도 했다. 병원에 두 번이나 입원한 사실도 있다. 술을 마신 후 폭언, 폭행도 하여 4년 전부터 집근처에서 별거하였다. 그런데도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폭행하여 가정폭력으로 여러 번 신고하였다. 그러다가 올 초 지인을 통해 남편이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남편이 미국에서 메일을 보냈고 이혼하고 싶으면 서류를 보내라고 하였다. 그런데 현재는 연락이 또 두절된 상태이다. 딸이 한 명 있는데 내가 키우고 이혼하고 싶다.

외국인 남편

- 장기별거를 이유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

● **장기별거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와 갈등을 겪는 사례(내담자 40대 일본 남성)**

나는 일본에서 왔다. 23년 전 혼인신고하였고, 자녀가 한 명 있다. 공연 관련 일을 하다 보니 지방에 자주 다녔고, 아내와 떨어져 지낸 적이 많았다. 공연섭외, 공연비 등은 모두 아내가 자신 명의로 관리했다. 문제는 공연이 감소했고, 코로나가 겹치면서 일이 더 줄었다. 언제인가부터 집에 가려고 하면 아내가 오지 말라고 해서 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아내가 정부 지원을 받고 싶다며 내게 이혼을 요구해왔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다. 결국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왔다. 나 역시 이혼의 사가 없는 것은 아니나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 비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내는 지난 10년 간 전혀 교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실과 다르다.

2023년 한 해 동안 상담소에서 진행된 다문화가정의 상담 총 건수는 1,301건이었다. 그 중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는 1,034건(79.5%),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267건(20.5%)이었다.¹⁾

상담소 다문화 상담 건수,

실제 서울지역 다문화 이혼 건수보다 더 많아

2024년 3월 19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도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는 총 6,105건이었고, 그 중 서울지역 이혼 건수는 1,094건이었다. 본 상담소의 다문화가정 상담 건수는 1,301건으로 서울지역 실제 이혼 건수보다 더 많아 다문화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상당수가 상담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결혼이민자들 중에는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여성 242명, 남성 7명)도 있으나 분석의 편의상 본국을 기준으로 하여 외국인으로 표기함.

다문화가정은 혼인 성립 시부터 갈등 유발 요인이 더 많아 부부가 심각한 대립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이혼을 염두에 두고 절차 및 방식,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 다양하게 문의해왔다.

한편, 혼인신고는 하였으나 실제 혼인생활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혼인 사실 자체를 없애고자 혼인무효나 취소 절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고 혼인이 무효나 취소가 되지 않을 시에는 이혼으로라도 부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소송 시 주위적으로는 혼인무효나 취소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혼을 청구하는 양상을 보였다.

1.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상담

1) 내담자 및 상대자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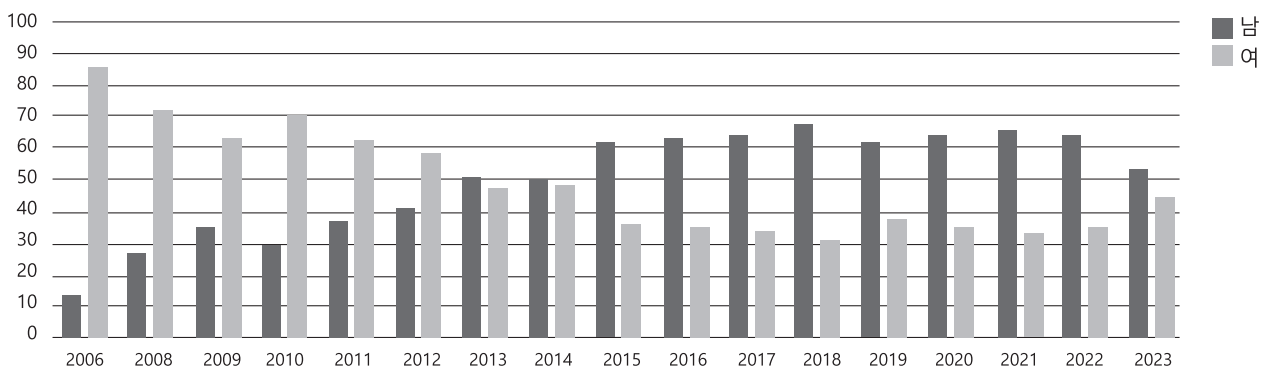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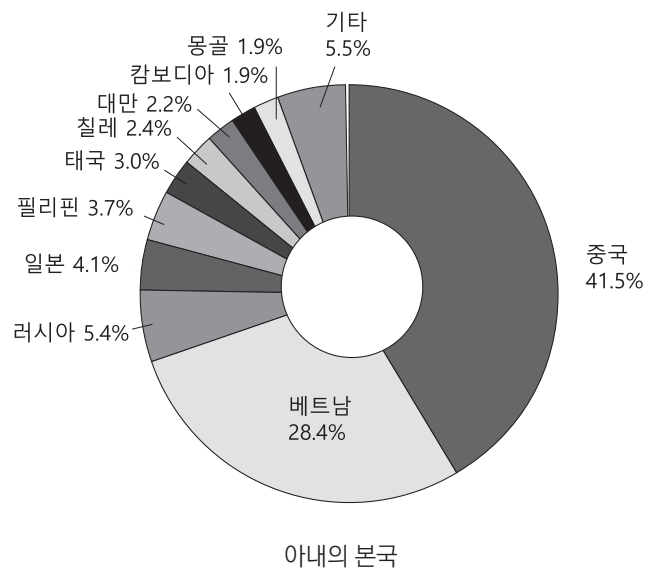
외국인 아내 방문 45.4%, 한국인 남편 방문 54.6%

한국인 남편 상담이 외국인 아내 상담보다
약 1.2배 더 많아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상담 1,034건 중 외국인 아내가 직접 상담소를 방문한 건수는 469건(45.4%), 한국인 남편이 방문한 건수는 565건(54.6%)으로 나타나 외국인 아내보다 한국인 남편의 상담이 1.2배 더 많았다. 다문화가정 상담에 대해 처음 분석을 시작한 2006년부터 2012

년까지는 모두 한국인 남편보다 외국인 아내의 상담이 더 많았다(한국인 남편의 상담 비율 2006년 14.0%, 2008년 27.2%, 2009년 36.1%, 2010년 29.4%, 2011년 37.5%, 2012년 40.9%, 2007년에는 분석하지 않음). 그런데 2013년부터는 외국인 아내보다 한국인 남편이 상담소를 더 많이 찾아(한국인 남편의 상담 비율 2013년 51.9%, 2014년 51.0%, 2015년 63.2%, 2016년 64.1%, 2017년 65.2%, 2018년 68.4%, 2019년 61.8%, 2020년 65.0%, 2021년 66.2%, 2022년 64.8%, 2023년 54.6%) 국제결혼 후 외국인 아내와의 갈등으로 고통을 겪는 한국 남성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인 아내의 본국은 중국, 베트남, 러시아, 일본, 필리핀, 태국 순으로 많아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 연도별 남녀별 비율

외국인 아내의 본국은 총 1,034명 중 중국이 429명(41.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베트남 294명(28.4%), 러시아 56명(5.4%), 일본 42명(4.1%), 필리핀 38명(3.7%), 태국 31명(3.0%) 순으로 나타났다.

남편은 50대, 아내는 30대가 가장 많고

남편이 연상인 경우 17~30살 차이가 29.5%에 달해

외국인 아내의 연령은 30대 407명(39.4%), 40대 224명(21.7%), 50대 206명(19.9%), 20대 114명(11.0%), 60대 이상 62명(6.0%) 순으로, 한국인 남편의 연령은 50대 336명(32.5%), 60대 이상 296명(28.6%), 40대 224명(21.7%), 30대 170명(16.4%), 20대 2명(0.2%)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나이 차이를 살펴보면, 부부의 나이가 같은 경우는 45명(4.3%), 남편이 연상인 경우는 894명(86.5%), 아내가 연상인 경우는 68명(6.6%), 미상인 경우는 27명(2.6%)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연상인 경우 중에서는 17~30년 차이가 264명(29.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13~14년 108명(12.1%), 7~8년 94명(10.5%), 5~6년 · 9~10년 각 93명(각 10.4%), 1~2년 72명(8.1%), 15~16년 70명(7.8%), 11~12년 49명(5.5%), 3~4년 28명(3.1%), 31년 이상 23명(2.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이 연상인 경우 중에서는 1~2년이 50명(73.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3~4년 12명(17.6%), 5~6년 4명(5.9%), 9~10년 · 11~12년 각 1명(각 1.5%) 순으로 나타났다.

●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례 (내담자 60대 한국 남성)

13년 전 23세 차이가 나는 베트남 여성과 혼인하였다. 혼인 후 아들 두 명을 낳았는데 8년 전 상대가 둘째 아이만 데리고 무단가출을 하였다.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되어 둘째 아이의 출입국확인서를 발급받아 보니 8년 전 한국을 출국한 후 현재까지 입국한 사실이 없었다. 아마도 상대는 둘째 아이와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 같다. 살면서 서로 언어도 통하지 않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서 다툼이 잦았다. 현재 나는 큰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데 더 이상은 혼인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 이혼을 원한다.

●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례 (내담자 30대 중국 여성)

남편과 25세 차이가 난다. 중국에서 일할 때 남편을 알게 되었고, 혼인까지 하게 되었다. 이후 함께 사는 동안 계속해서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 남편은 요리사였는데 한 직장에 오래 있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떠돌아 결국 생활비도 내가 거의 다 부담하며 지내왔다. 남편은 현재 다른 나라에 가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아이를 데리고 무조건 오라고 한다. 현재 결혼비자로 와서 거주 중이고 곧 기간 만료라 연장을 해야 하는데 남편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다. 이혼하고 한국에서 아이를 키웠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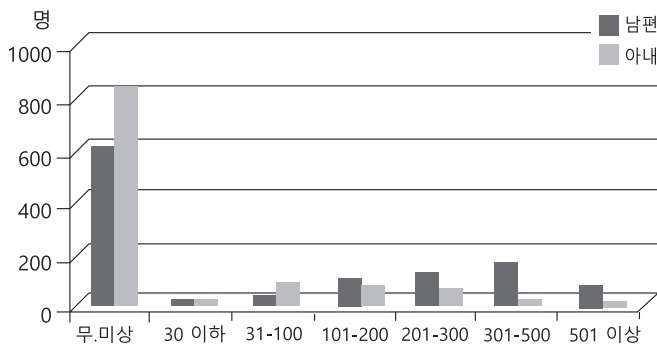
초졸과 무학 비율 한국인 남편이 더 높아

외국인 아내는 고졸이 21.3%(22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인 남편은 대졸 이상이 22.3%(231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런데 교육정도가 낮은 초졸의 경우 외국인 아내는 1.9%(20명)이었으나 한국인 남편은 6.1%(63명)이었고, 무학도 외국인 아내는 0.1%(1명)이었으나 한국인 남편은 0.6%(6명)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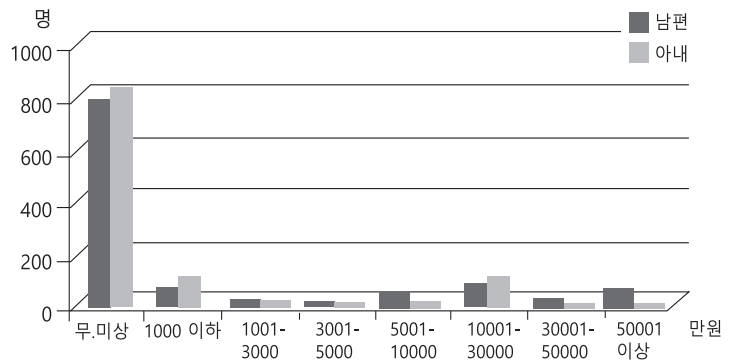
외국인 아내의 86.2%,
한국인 남편의 57.2% 안정적 수입 없거나 미상

외국인 아내의 78.1%,
한국인 남편의 74.1% 보유재산 없거나 미상

외국인 아내는 주부(230명, 22.2%), 한국인 남편은 무직(184명, 17.8%)이 가장 많았다. 한편, 주부와 무직, 수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 재산 보유액별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 월 수입별

입이 안정적이지 못한 단순노무, 미상을 합한 비율이 외국인 아내는 86.2%, 한국인 남편은 57.2%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아내의 78.1%(808명)와 한국인 남편의 74.1%(766명)가 보유재산이 없거나 미상이며, 외국인 아내의 81.5%(843명), 한국인 남편의 58.3%(603명)가 수입이 없거나 미상인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문화가정 상담 재혼 비율 35.2%, 일반 이혼상담보다 재혼 비율 높아

혼인형태의 경우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가 38.8%(401명)로 가장 많았고, 남성 재혼-여성 초혼인 경우는 12.0%(124명), 남성 초혼-여성 재혼인 경우는 4.7%(49명), 남녀 모두 재혼인 경우는 18.5%(191명), 미상 26.0%(269명)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상담에서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35.2%로 일반가정의 이혼상담에서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16.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사이에 미성년 친자가 있는 경우는 48.7%(504명)이었으며, 한국인 남편에게 미성년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는 3.8%(39명), 외국인 아내에게 미성년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는 0.8%(8명)로 나타났다.

● 재혼 후 아내의 전혼자녀와 갈등을 겪는 사례 (내담자 70대 한국 남성)

오래 전 중국에 여행을 갔다가 지인의 소개로 상대방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이혼 후 혼자서 자녀들을 키워왔기에 주변에서 재혼을 권유했고, 상대방도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어서 재혼하게 되었다. 그런데 혼인신고 이후 중국어가 어려워 상대방과 소통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같이 살지도 않았다. 자녀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결혼을 결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후회가 되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혼인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 줄 알았다. 아이들에게 떳떳하고 싶고 같이 살지도 않으니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다.

● 재혼 후 남편과 경제갈등을 겪는 사례 (내담자 70대 중국 여성)

나는 15년 전 중국에서 왔고, 한국인 남편과 혼인하였다. 남편과 나 모두 재혼이었다. 그런데 내가 3년 전 중국에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3년만에 돌아오게 되었다. 그랬더니 남편이 내게 이혼을 요구해왔다. 남편의 뜻이라기보다는 남편의 딸이 남편을 좌지우지한 것으로 보인다. 남편은 한 달에 180만원 가량 연금을 받고 있는데 20만원만 관리비로 낼 뿐 그 외 돈은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간병인 등을 하며 식비 등을 부담해왔다. 남편은 내가 돈벌이에만 매진할 뿐 자신과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고 하나 돈을 안 주니 내가 벌 수밖에 없다. 나도 이혼을 원한다.

전체의 30.5%가 별거 중인 것으로 나타나

혼인 기간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은 4.8%(50명), 1년 이상~2년 미만은 2.6%(27명), 2년 이상~3년 미만은 3.6%(37명), 3년 이상~5년 미만은 11.9%(123명), 5년 이상~10년 미만은 18.1%(187명), 10년 이상은 45.6%(471명)로 나타났다.

한편,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전체의 30.5%(351명)가 별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거 기간은 10년 이상인 경우가 49.8%(157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1년 미만 22.5%(71명), 5년 이상~10년 미만 12.1%(38명), 3년 이상~5년 미만 9.2%(29명), 1년 이상~2년 미만 4.4%(14명), 2년 이상~3년 미만 1.9%(6명)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들이 총 77명이었고, 그들 중 이미 별거 중인 사람들이 11명에 달했다. 국적취득(간이 귀화) 신청을 위해서는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 하고 체류연장을 위해서는 신원보증인인 배우자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결혼기간 2년 미만인 사람들 중 이미 별거하고 있는 경우가 14.3%이고 이 경우 외국인 아내는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조차 충족시키지 못해 국적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들은 총 818명이었고 이 경우에도 이미 별거 중인 사람이 304명으로 나타나 별거 비율이 37.2%에 달하였다. 국적취득에 있어서 결혼기간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별거 시에는 외국인 아내가 한국인 남편에게 최소한의 협조도 받지 못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해왔다. 또한, 이혼을 원하더라도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별거하게 된 경우가 많아 소송 시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혼상담 사유 분석²⁾

외국인 아내는

한국인 남편의 폭력, 가출, 기타 순으로 상담

한국인 남편은

아내의 가출, 기타, 아내의 외도 순으로 상담

외국인 아내의 이혼상담 사유(총 205명)

1위 '남편의 폭력'(민법 제840조 3호)(58.0%, 119명)

2위 '남편의 가출'(2호)(22.0%, 45명)

3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경제갈등, 장기별거, 생활무능력·알콜중독,

기물파손 등이 우선 순위임)'(6호)(16.6%, 34명)

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담 사유(총 275명)

1위 '아내의 가출'(2호)(53.5%, 147명)

2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장기별거, 잦은 가출, 결혼조건속임·배우자의

이혼 강요, 무시/모욕 등이 우선 순위임)'

(민법 제840조 6호)(42.9%, 118명)

3위 '아내의 외도'(1호)(2.5%, 7명)

※ 외국인 아내가 이혼상담을 한 경우

외국인 아내가 이혼상담을 한 경우에는 3호 '남편의 폭력'이 58.0%(119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호 '남편의 가출' 22.0%(45명),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16.6%(34명), 4호 '내 부모에 대한 부당 대우' 2.4%(5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상담소의 2023년도 전체 이혼상담에서 여성 내담자(4,011명)가 제시한 사유는 3호(남편의 폭력 56.5%,

2) 이하에서는 아내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 상담 총 1,034건 중 이혼 사유를 제시한 480건에 대해서만 별도로 분석하였다.

2,267명)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 차이, 경제갈등, 폭언, 빚, 생활무능력 순 26.5%, 1,063명), 2호(남편의 가출 10.5%, 421명), 1호(남편의 외도 6.1%, 244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혼상담과 비교해볼 때 ‘남편의 폭력’이 가장 많았던 점은 동일하였으나 다음 순위로 외국인 아내는 남편의 가출을 제시하였으나 전체 이혼상담에서 여성은 기타 사유를 제시해 차이를 보였다. 남편의 가출을 이혼사유로 호소한 외국인 여성의 비율은 22.0%로 전체 이혼상담에서 남편의 가출을 호소한 여성의 비율인 10.5%보다 훨씬 높아 아내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에서 남편의 폭력 못지않게 남편의 가출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인 아내들이 세 번째로 많이 제시한 사유는 6호 ‘기타사유’인데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34명 중 ‘경제갈등’이 26.5%(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장기별거’ 14.7%(5명), ‘생활무능력’·‘알콜중독’ 각 11.8%(각 4명), ‘기물파손’ 8.8%(3명), ‘전과/복역’·‘성격차이’·‘배우자의 이혼강요’ 각 5.9%(각 2명) 순이었고, 그 외 ‘무시/모욕’·‘폭언’ 등이 각 2.9%(각 1명)로 나타났다.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협의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만을 문의한 경우 편의상 6호사유를 분류하였는데 이러한 경우도 1명 있었다.

● 한국인 남편의 폭력, 외도, 거짓말 등으로 갈등을 겪는 사례 (내담자 50대 중국 여성)

중국에서 한국으로 시집 왔다. 당시 남편에게 땅도 많고 여유가 있다고 하였으나 다 거짓이었고, 막상 한국에 와보니 작은 집에 시집식구가 14명이나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은 계속 외도를 하였고, 수시로 나를 폭행하였다. 아이 둘을 낳았는데 누구 한 명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도 없었고, 시집식구들의 모욕과 학대도 심했다. 한번은 중국에서 부모님이 왔는데 내 부모가 나를 중국으로 빼돌리려 한다며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는다.

● 한국인 남편의 가출 및 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는 사례(내담자 30대 중국 여성)

결혼한 지 12년되었고, 자녀는 두 명 있다. 작년 초에 남편이 가출했고, 봄이 되자 시모가 남편의 얇은 옷가지를 가지러 왔기에 이혼을 요구했더니 남편이 찾아와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폭행해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후에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또 연락을 끊어버렸다.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니 경찰에서는 남편과 연락이 닿았다며 실종처리를 하지 않았다. 남편은 혼인 생활 내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내가 대신 갚게 하였고, 형사 합의금을 물어준 적도 많았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이혼하고 아이들을 내가 키웠으면 한다.

● 한국인 남편의 생활무능력을 이유로 갈등을 겪는 사례 (내담자 40대 중국 여성)

나는 중국에서 왔고,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다. 남편은 그동안 일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 내가 일당을 받아 겨우겨우 생계를 꾸려왔다. 아이가 두 명이고 학비와 생활비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남편은 여전히 일을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었고, 1년 가까이 실형을 살고 나왔다. 더 이상은 같이 살 수 없어 이혼하자 했더니 알겠다고는 하는데 실제 응할지는 모르겠다. 이혼하는 방법은?

※ 한국인 남편이 이혼상담을 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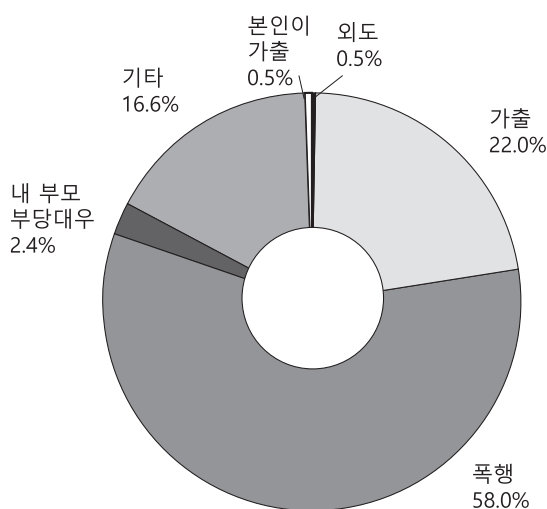
한국인 남편이 이혼상담을 한 경우에는 2호 ‘아내의 가출’이 53.5%(14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42.9%(118명), 1호 ‘아내의 외도’ 2.5%(7명), 3호 ‘아내의 폭력’ 1.1%(3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상담소의 2023년도 전체 이혼상담에서 남성 내담자(1,002명)가 제시한 사유는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 차이, 배우자의 이혼강요, 경제갈등,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빗 순 57.0%, 571명), 2호(아내의 가출 27.9%, 280명), 3호(아내의 폭력 7.7%, 77명), 1호(아내의 외도 7.3%, 73명) 순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남편과 차이를 보였다.

한국인 남편이 두 번째로 많이 제시한 6호 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118명 중 ‘장기별거’가 63.6%(75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잡은 가출’ 5.9%(7명), ‘결혼 조건속임’·‘배우자의 이혼강요’ 각 5.1%(각 6명), ‘성격차이’·‘무시/모욕’ 각 4.2%(각 5명), 경제갈등 2.5%(3명), ‘불성실한 생활’·‘빚’·‘폭언’ 각 0.8%(각 1명) 순이었다. 그 외 구체적인 사유 없이 협의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만을 문의한 경우도 8명 있었다.

한국인 남편들이 가장 많이 제시한 사유는 ‘아내의 가출’로 전체의 53.5%를 차지하였다. 상담을 통해 보면 아내가 가출 후 잠적해 협의이혼을 시도해 볼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외국인 아내와 특별한 갈등이 없었는데 아내가 잠적한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외국인 아내가 한국에 입국한 후 곧바로 사라져 실질적인 혼인생활조차 해보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담자들 중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았는데 배우자가 있을 때에는 정부 지원금 등을 받을 때 제한이 있어 형식적인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상담소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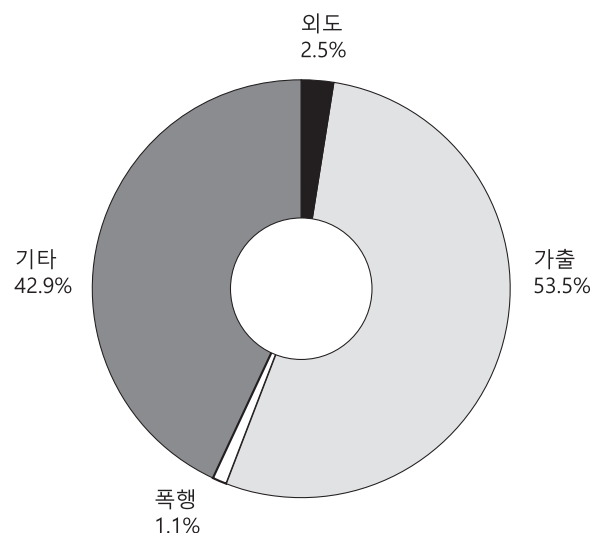
아내가 상담

● 아내의 가출로 이혼을 원하는 사례 (내담자 60대 한국 남성)

아내는 베트남 국적자이고 나와 19세 차이가 난다. 13년 전 중개업체를 통해 소개받아 베트남 현지에서 만나고, 이후 한국에 입국은 하였으나 며칠 지나지 않아 부산에 지인을 만나러 가겠다고 나서서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러다 3년 전쯤 검찰청에서 상대방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가 온 적이 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 문제는 기초수급자로 생활해왔는데 이번에 배우자가 있는 관계로 수급자 지정이 어렵다고 하여 이혼하고자 한다.

● 장기별거를 이유로 이혼을 원하는 사례 (내담자 70대 한국 남성)

아는 지인이 중국 여성을 소개해 준다고 제안해 중국으로 가서 상대방을 만났다. 2003년 혼인했는데 한 달 후 상대가 자신의 친정어머니를 상의도 없이 한국으로 초대하였다. 이로 인해 1년 정도 단칸방에서 세 명이 생활하게 되었고 불편함을 견딜 수 없어 결국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다. 2007년 상대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자 그 때부터 연락을 끊어 현재는 소식조차 모른다. 나는 현재 퇴행성 관절염으로 걷기 어렵고 이로 인해 경제생활이 어려워져 수입이 전혀 없다. 이에 기초수급 신청을 하려 했더니 상대방과 혼인관계가 유지되어 있어 안 된다고 한다. 이혼하는 방법은?



남편이 상담

● 아내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원하는 사례 (내담자 30대 한국 남성)

미얀마 여성과 6년 전 결혼해 딸 한 명을 두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내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내도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아내는 평소에도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다. 한국어도 배우려는 의지가 없어 한국에 온 지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 더 이상은 혼인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아내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 또한, 평소 아이에 대해 관심도 없었으면서 이혼하게 되면 아이는 본인이 키우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혼하고 내가 아이를 키웠으면 한다.

2.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의 상담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다문화가정 상담(총 1,301건) 중 20.5%(267건)를 차지하였다.

한국인 아내의 상담이

외국인 남편의 상담보다 5.4배 많아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의 상담 267건 중 외국인 남편이 직접 상담소를 방문한 건수는 42건(15.7%), 한국인 아내가 방문한 건수는 225건(84.3%)으로 나타나 외국인 남편보다 한국인 아내의 상담이 5.4배 더 많았다.

남편의 본국은 중국, 일본, 미국, 파키스탄,
이집트·터키 순

그 외 필리핀·대만·싱가포르·네팔·호주 등 다양해

외국인 남편의 본국은 총 267명 중 중국이 107명(40.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일본 57명(21.3%), 미국

34명(12.7%), 파키스탄 19명(7.1%), 이집트·터키 각 6명(각 2.2%), 필리핀·대만 각 4명(각 1.5%), 싱가포르·네팔·호주 각 3명(각 1.1%), 러시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이란·몽골·뉴질랜드·캐나다 각 2명(각 0.7%), 베트남·라오스·인도·브라질·프랑스·영국·이탈리아 각 1명(각 0.4%) 순으로 나타났다.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남편의 본국은 중국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는 그 다음 순위가 베트남, 러시아, 일본, 필리핀, 태국 순이었던 반면,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일본, 미국, 파키스탄, 이집트·터키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혼상담 사유 분석³⁾

외국인 남편의 이혼상담 사유(총 7명)

1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장기별거, 성격차이 순)'(6호)(100.0%, 7명)

한국인 아내의 이혼상담 사유(총 163명)

1위 '남편의 가출'(2호)(45.4%, 74명)

2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장기별거, 성격차이, 생활무능력 등이 우선 순위임)
(6호)(36.8%, 60명)

3위 '남편의 외도'(1호)(11.0%, 18명)

이혼상담 사유를 살펴보면, 외국인 남편이 상담한 경우에는 모두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나타났고, 6호 사유에는 '장기별거', '성격차이' 등이 있었다.

한국인 아내가 상담한 경우에는 2호 '남편의 가출'이 45.4%(74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6호 '기타 혼인을 계

3) 이하에서는 남편이 외국인인 다문화 가정 상담 총 267건 중 이혼 사유를 제시한 170건에 대해서만 별도로 분석하였다.

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6.8%(60명), 1호 '남편의 외도' 11.0%(18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아내들이 두번째로 많이 호소한 6호 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60명 중 '장기별거'가 65.0%(39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성격차이' 15.0%(9명), '생활무능력' 10.0%(6명), '불신' 3.3%(2명) 순으로 나타났다.

3. 주요 발견 사항 요약

2023년 한 해 동안 상담소에서 진행된 다문화가정의 상담 총 건수는 1,301건이었다. 그 중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는 1,034건(79.5%),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267건(20.5%)이었다.

2024년 3월 19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도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는 총 6,105건이었고, 그 중 서울지역 이혼 건수는 1,094건이었다. 본 상담소의 다문화가정 상담 건수는 1,301건으로 서울지역 실제 이혼 건수보다 더 많아 다문화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상담수가 상담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상담 1,034건 중 외국인 아내가 직접 상담소를 방문한 건수는 469건(45.4%), 한국인 남편이 방문한 건수는 565건(54.6%)으로 나타나 외국인 아내보다 한국인 남편의 상담이 1.2배 더 많았다.

외국인 아내의 본국은 총 1,034명 중 중국이 429명(41.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베트남 294명(28.4%), 러시아 56명(5.4%), 일본 42명(4.1%), 필리핀 38명(3.7%), 태국 31명(3.0%) 순으로 나타났다.

아내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은 혼인 성립 시부터 갈등 유발 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본 상담소에 이혼상담을 받으러 온 일반가정과 비교해보면, 일반가정은 남편이 1~2년 연상이 가장 많았던 반면에 다문화가정은 한국인 남편이 17~30년 연상이 가장 많아 연령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남편 연상 중 17~30년 차이, 일반가

정 6.0%/다문화가정 29.5%).

아내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은 교육정도가 낮은 초졸의 경우 외국인 아내는 1.9%(20명)이었으나 한국인 남편은 6.1%(63명)이었고, 무학도 외국인 아내는 0.1%(1명)이었으나 한국인 남편은 0.6%(6명)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의 78.1%와 한국인 남편의 74.1%가 보유재산이 없거나 미상이며, 외국인 아내의 86.2%, 한국인 남편의 57.2%가 안정적인 수입이 없거나 미상인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혼인형태면에서도 재혼비율이 일반가정은 16.2%였으나 아내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은 35.2%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재혼비율이 높았다.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전체의 30.5%가 별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거 기간은 10년 이상인 경우가 49.8%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1년 미만 22.5%, 5년 이상~10년 미만 12.1%, 3년 이상~5년 미만 9.2%, 1년 이상~2년 미만 4.4%, 2년 이상~3년 미만 1.9%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가 제시한 이혼상담 사유는 한국인 남편의 폭력, 남편의 가출, 기타 순으로 많았고, 한국인 남편이 제시한 이혼상담 사유는 아내의 가출, 기타, 아내의 외도 순으로 많았다.

김진영 상담위원

2023년 가정위탁아동 미성년후견인 선임 소송구조 사건 분석

“아이만 생각하면 주변에 추천하고 싶지만 제도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위탁아동인 소영(4·가명)이를 키우는 강연숙(52)씨는 “가끔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강씨는 지난해 3월 소영이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응급실에 갔지만 친모가 갑자기 연락이 끊겨 수술동의서를 받지 못했다. 친권이 없는 위탁부모들은 원칙적으로 이런 서류에 서명할 수 없다. 응급처치가 가능한 응급실로 향하거나 매번 의사의 재량에 기대야 한다. 다행히 소영이의 수술은 이번엔 문제없이 끝났지만 강씨는 조마조마했던 당시의 심정을 잊을 수가 없다.

2024년 1월 3일 ““법적 부모 아니라고...” 제도에 막힌 위탁부모의 눈물”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기사의 제목만으로도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이나 위탁부모의 권리가 부족하다는 내용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위탁부모가 법정대리인이 아니어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위탁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결과를 낳는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상담현장에서도 위탁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들이 친권자의 실질적 부재, 비협조 등으로 인해 행정서류 제출과 의료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휴대

폰 개설, 여권 발급, 문화바우처 이용 등에 큰 불편이 생기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소는 위탁가정의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사례를 위탁받아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위한 소송구조를 지원하고 있다. 본소의 위탁아동 미성년후견인 선임 관련 소송구조 사건은 2016년 6건으로 시작하여 2019년 24건, 2020년 52건, 2021년 74건, 2022년 7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왔다. 이것은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여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가정위탁 현장에 본소가 독보적으로 꾸준히 법률구조를 지원해 오으로써 위탁가정과 위탁아동에 대한 권리의식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본소가 2023년 한 해 동안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의뢰받아 진행한 위탁아동에 대한 소송구조 사건(80건)²⁾의 상담 내용과 법원에 제출된 서면 및 법원의 재판 내용 등을 토대로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의 일반적인 특성과 위탁현황, 소송사유 및 소송결과를 분석하고 소송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서울신문, ““법적 부모 아니라고...” 제도에 막힌 위탁부모의 눈물[잠시만 부모가 되어주세요]”.

<https://m.seoul.co.kr/news/society/2024/01/03/20240103500127> (2024. 1. 3. 15:19).

2) 2023년 가정위탁아동 관련 소송구조는 친권상실 등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 등을 포함하여 80건으로, 총 58개 위탁가정(위탁부모 58명, 위탁아동 6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I. 소송구조 대상

1.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의 주요 특성

(1) 성별

2023년 소송구조가 진행된 위탁가정은 총 58개 가정으로 위탁부모 58명, 위탁아동 64명이었다. 위탁부모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17명(29.3%), 여성 41명(70.7%)으로 위탁부모 중 위탁모의 신청이 2배 이상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민법에서 미성년후견인의 수를 한 명으로 제한하고 있어(민법 제930조 제1항), 위탁부모 중 한 명만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으로 위탁부모 중 위탁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기를 더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위탁아동의 성별은 남아 35명(54.7%), 여아 29명(45.3%)으로 나타났다.

(2) 연령

위탁부모의 연령을 보면 50대 23명(39.7%), 60대 16명(27.6%), 40대 13명(22.4%), 30대 4명(6.9%), 20대 2명(3.4%)의 순으로, 20대부터 60대까지 있었다. 특히 50대 이상의 위탁부모의 비중이 67.3%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을 소송구조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자신의 자녀를 어느 정도 성장시키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은 중장년층이 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아동을 위탁받는 경우 및 조부모가 손자녀를 대리양육하며 위탁보호를 지정받는 경우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위탁아동의 연령별 분포는 8-13세 31명(48.4%), 4-7세 19명(29.7%), 1-3세 9명(14.1%), 14-18세 5명(7.8%)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입학 등 아동의 사회생활이 시작되면서 아동의 법정대리인 부재로 인한 행정처리 등의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고자 하는 위탁부모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친부모의 존재여부

친부모가 있는 위탁아동 49명(76.6%), 친부모가 없는 위탁아동 15명(23.4%)으로, 위탁아동 10명 중 7명은 친부모가 있는 경우였다.

〈표 1〉 위탁부모의 주요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7	29.3
	여성	41	70.7
연령	20대	2	3.4
	30대	4	6.9
	40대	13	22.4
	50대	23	39.7
	60대	16	27.6
계		58	100.0

〈표 2〉 위탁아동의 주요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아	35	54.7
	여아	29	45.3
연령	1-3세	9	14.1
	4-7세	19	29.7
	8-13세	31	48.4
	14-18세	5	7.8
친부모 존재여부	있음	49	76.6
	없음	15	23.4
계		64	100.0

2. 가정위탁 현황

(1) 위탁가정유형

위탁가정의 유형은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가정위탁보호가정인 일반가정위탁과 학대피해 아동, 2세 이하의 아동, 장애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가정위탁, 그리고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가정위탁으로 나뉜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위탁가정유형별 비율은 일

반가정위탁 53건(91.4%), 전문가정위탁 5건(8.6%), 일시 가정위탁 0건(0.0%)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가정위탁 유형 중 친인척이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경우가 26건(44.8%), 친인척이 아닌 일반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가 27건(46.6%)을 차지하였다. 전체 위탁가정 중 혈연관계가 없는 가정에서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신청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혈연관계가 없는 위탁가정에서 미성년후견인 선임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부모나 친인척 양육의 경우에는 친부모와 가끔 연락이 되어 친부모의 협조가 어느 정도 가능하거나, 미성년후견인 선임에 전제가 되는 친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키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혈연관계가 없는 가정의 경우는 친부모와의 교류가 거의 단절되어 부모의 협조를 얻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탁아동의 양육을 위해 소송을 통해서라도 법정대리인으로 지정받아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위탁가정유형

구분		빈도(건)	비율(%)
일반	친인척	26	44.8
	친인척 외	27	46.6
전문		5	8.6
일시		0	0.0
계		58	100.0

(2) 위탁사유

가정위탁 사유로는 부모가 위탁하거나 입양을 의뢰한 경우가 13건(22.4%)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의 가출/연락두절이 된 경우와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경우가 각 12건(각 20.7%), 부모의 학대/방임 11건(19.0%),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경우 10건(17.2%)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와 부모의 수감이나 질병에 의한 입원으로 위탁된 경우가 각 9건(각 15.5%), 미혼모시설/입양시설에 맡겨진 경우가 5건(8.6%)이었다.

이렇듯 가정위탁이 필요한 사유는 친부모의 연락두절과 양육포기 및 이혼과 사망 등으로 인한 친가정의 해체 등으로 앞으로도 친부모의 돌봄이나 친가정으로의 복귀를 기대

하기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위탁사유(중복가능)

구분	빈도(건)	비율(%)	전체(건)	전체(%)
부모의 사망	9	15.5	58	100.0
부모의 가출/연락두절	12	20.7	58	100.0
부모의 이혼/별거	12	20.7	58	100.0
부모의 수감/질병	9	15.5	58	100.0
부모의 학대/방임	11	19.0	58	100.0
베이비박스(아동일시보호소)	10	17.2	58	100.0
미혼모시설/입양시설	5	8.6	58	100.0
부모의 위탁/입양 의뢰	13	22.4	58	100.0

II. 소송구조 유형 및 결과

1. 사건별 분류

2023년에 진행한 소송구조 사건 총 80건을 살펴보면, 친권자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위탁부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이 34건으로 42.4%를 차지하였다. 친권자가 없는 위탁아동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은 16건(20.0%), 미성년후견인의 질병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후견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 미성년후견인을 변경한 사건이 1건(1.3%) 진행되었다.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위탁부모가 위탁아동과 더욱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아동이 학교와 사회 생활에 위축되지 않도록 아동의 성과 본을 위탁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성과 본 변경 허가 청구 사건 9건(11.2%), 위탁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아동 명의로 발생시킨 채무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은 2건(2.5%) 있었다. 위탁아동의 성과 본을 변경한 후 변경한 성에 어울리는 이름을 사용하고자 개명을 신청한 사건, 보호시설에 거주하다 퇴소한 고아 아닌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위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후견인 지정을 취소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 허가의 취소 사건, 과도한 채무를 남기고 부모가 사망한 위탁아동을 위한 상속포기 신청,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시

급한 사무처리가 필요하여 임시후견인 선임을 청구한 사건이 각 1건(각 1.3%) 있었다. 그 외 신청사건으로 특별대리인 선임 11건(13.7%),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사건이 3건(3.7%) 있었다.

〈표 5〉 사건별 분류

구분	빈도(건)	비율(%)
개명	1	1.3
미성년후견인 변경	1	1.3
미성년후견인 선임	16	20.0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3	3.7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 허가의 취소	1	1.3
상속포기	1	1.3
성과 본의 변경	9	11.2
임시후견인 선임	1	1.3
채무부존재 확인	2	2.5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34	42.4
특별대리인 선임	11	13.7
계	80	100.0

2. 소송사유

소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주원인으로 대부분의 위탁부모가 행정 처리상의 어려움을 꼽았다(59건, 73.7%). 또한 친권자가 아동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사회보장급여를 부정으로 지급하고, 아동의 명의로 핸드폰, 인터넷 등을 개통하는 등 아동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쳐 친권남용을 막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 경우도 9건(11.3%) 있었으며, 위탁아동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혼란이나 심리적 위축으로 소송을 결심한 경우도 12건(15.0%) 있었다. 이처럼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에 대한 소송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에는 위탁아동을 더욱 안정적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바가 컸다.

〈표 6〉 소송 사유

구분	빈도(건)	비율(%)
행정 처리상의 어려움(양육 안정성)	59	73.7
정체성 혼란, 위축	12	15.0
친권남용	9	11.3
계	80	100.0

3. 소송 결과 및 기간

2023년에 진행한 사건 중 2024년 5월 현재까지 65건(81.3%)이 종결되었고, 취하한 사건 9건과 이송된 사건 1건을 제외한 55건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다(승소율 100.0%). 심판 청구에서 사건 종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3개월 미만인 41건(63.1%),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인 14건(21.5%), 6개월에서 1년 미만인 10건(15.4%)으로, 10건 중 8건의 사건이 6개월 내에 종결되었다.

〈표 7〉 소송 현황

구분	빈도(건)	비율(%)
진행중	15	18.7
종결	65	81.3
계	80	100.0

〈표 8〉 소송 기간

구분	빈도(건)	비율(%)
3개월 미만	41	63.1
3개월-6개월 미만	14	21.5
6개월-1년 미만	10	15.4
계	65	100.0

〈표 9〉 소송 결과

종결사건	결과				승소율 (%) ³⁾
	승소	패소	취하	기타 ⁴⁾	
개명	1	0	0	0	100.0
미성년후견인 변경	1	0	0	0	100.0
미성년후견인 선임	10	0	4	0	100.0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3	0	0	0	100.0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 허가의 취소	1	0	0	0	100.0
상속포기	1	0	0	0	100.0
성과 본의 변경	9	0	0	0	100.0
임시후견인 선임	1	0	0	0	100.0
채무부존재 확인	2	0	0	0	100.0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16	0	4	1	100.0
특별대리인 선임	10	0	1	0	100.0
계	55	0	9	1	100.0

3) 승소율 : {(승소)/(승소+패소)}×100
4)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 이송 1건.

Ⅲ. 소송구조 사례 및 문제점

1. 위탁아동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청구 사건 현황

위탁아동의 성과 본을 위탁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청구 사건은 2019년과 2020년 각 2건, 2021년 5건, 2022년 7건, 2023년 9건으로 점차 그 수가 증가하여 2023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위탁가정 소송구조 사건 중 1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였다. 위탁아동의 성과 본 변경 사건은 2019년 2건의 청구가 모두 원심에서 기각하는 심판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 하였고, 2건 모두 2심에서 1심 심판 취소 및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후 2020년부터 청구한 사건은 모두 허가 결정을 받아 위탁아동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를 청구하는 위탁가정의 수가 점차 늘어났다. 그런데 2023년 다음의 <사례 1>은 원심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다.

2.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청구 사건 사례

(1) <사례 1>의 경우

<사례 1>

위탁아동(김길동(가명), 남, 5세)은 베이비박스에 유기되었던 고아로 2018. ○○가정법원에서 성본창설허가를 받았다. 2022. 위탁부(홍문(가명))는 위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보호결정을 받아 아동을 양육하고 있으며, 같은 해 ○○가정법원에서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위탁부모는 위탁아동을 친자녀들과 차별 없이 양육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하여 가족의 일원으로 양육할 예정이다. 그런데 위탁아동이 성장하며 위탁부 및 다른 자녀들과 성이 달라 불필요한 혼란과 차별을 겪게 될까 염려하고 있다. 이에 위탁아동의 성과 본을 위탁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1) 사건 내용 및 원심의 판단

<사례 1>의 위탁아동은 부모를 모른 채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으로 아동보호시설로 인계된 후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보호시설장이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으며, 미성년후견인의 신청으로 아동보호시설장의 성과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따라 성과 본을 창설하였다.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위탁부는 아동을 친자녀로 여기며 양육하고 있으며, 아동도 위탁부모를 친부모로 알고 따르고 있다. 위탁부모는 아동이 이미 위탁부와 본인의 성이 다름을 인지하기 시작하였기에 성장하며 위탁부 및 위탁부의 자녀들과 성이 다른 점에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될까 염려하고 있었다. 또한 위탁부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불필요한 차별을 받거나 부자연스러운 관심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아동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심판하였다.

2) 원심 판단의 문제점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 조항에서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

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 대법원 2010. 3. 3.자 2009스133 결정, 대법원 2022. 3. 31.자 2021스3 결정 각 참조)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성·본 변경 여부에 따른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거나 그 밖의 이유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였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이 부당하다.

가. 위탁아동 및 친권자·양육자의 의사

위탁아동은 부모를 모른 채 베이비박스에 유기되었던 아동으로 아동의 위탁모가 아동보호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중 2017년 생후 1개월경인 위탁아동을 만나 2018년까지 해당 시설에서 위탁아동을 전담하여 양육하였고, 2018년 말부터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을 가정에 정기적으로 데려와 보살폈다. 2019년부터 아동은 위탁부모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위탁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자라고 있다. 위탁부는 2022년 위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보호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위탁아동은 자신의 성을 한 집에 사는 후견인, 후견인의 자녀들과 같은 성으로 변경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아동의 양육자이자 법정대리인인 위탁부는 위탁아동의 성과 본의 변경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와 이루어질 경우 각 불이익의 정도의 비교형량

위탁아동이 유치원에 다닐 때 위탁아동의 이름을 ‘김길

동’으로 등록하면서 아동의 아버지 성명을 ‘홍문’이 아닌 ‘김문’으로 등록하였다. 아동은 성장하며 자신의 성이 위탁부의 성과 다름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 후 가족과 이웃들은 아동을 위탁부의 성을 따라 ‘홍길동’으로 부르기 시작하였다. 또한 2022년 전원한 유치원에서 위탁아동의 이름을 ‘홍길동’으로 등록하여 유치원에서도 ‘홍길동’으로 불리고 있다.

이와 같이 위탁아동이 현재의 성인 “김”으로 계속 살아야 한다면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적지 않다 할 것이다.

반면 위탁아동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위탁아동에게 발생할 불이익은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탁아동은 부모를 모른 채 유기된 아동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과 본은 아동의 혈연이나 가족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에 이를 변경한다고 하여 위탁아동에게 정체성의 혼란이 오거나 원가족과의 유대 관계가 단절될 우려가 전혀 없다.

3) 결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성·본 변경에 대한 위탁아동과 위탁부모의 의사 및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명백한 반면,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초래될 불이익은 전무하다. 그렇다면 위탁아동의 성·본 변경은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권리남용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허가되어야 할 것이다.

4) 즉시항고 및 허가결정

본소는 원심 판단에 불복하여 즉시항고 하였고, 2023년 12월 12일 1심 심판 취소 및 성과 본의 변경허가 결정이 확정되었다. 2023년 2월 10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지 10개월 만에 받은 결정이며, 2023년 1월 19일 원심을 접수한 날로부터는 약 11개월이 소요되었다.

(2) <사례 2>의 경우

<사례 2>

위탁아동(남, 7세)은 베이비박스에 유기되었던 고아로 2016. ○○가정법원에서 성본창설허가를 받았다. 2017. 위탁부모는 위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보호결정을 받아 아동을 양육하고 있으며, 2020. ○○가정법원에서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위탁아동은 위탁부모를 친부모로 알고 있으며, 위탁부모의 자녀를 친누나로 여기며 생활하고 있다. 위탁부모는 위탁아동이 어린이집에 입소할 때 위탁부의 성과 자녀의 이름을 참고하여 예명을 만들어 주었고, 어린이집에 이 예명을 사용토록 부탁하였다. 위탁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자 위탁부모는 위탁부와 위탁아동의 성이 달라 학교에서 차별을 받을까 염려하여 국제학교에 입학시켰다. 그러나 위탁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병원 등에서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본명으로 인해 의문을 가지는 등 점차 본명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의 불일치로 인한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어 위탁아동의 성과 본을 변경하기로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2023년 2월 6일 <사례 1> 사건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고 즉시항고심을 진행하던 중 <사례 2> 사건을 의뢰받았다. 공교롭게도 <사례 2>의 사건은 <사례 1>의 사건과 관할법원이 같고, 아동의 나이를 제외한 모든 내용이 유사한 사례였다. <사례 2> 사건의 의뢰인에게 최근 <사례 1> 사건이 같은 법원에서 기각하는 심판을 받아 <사례 2> 사건도 패소의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였다. 의뢰인은 간절하게 위탁아동의 성과 본 변경을 원하고 있기에 패소의 가능성이 있어도 일단 진행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사례 2> 사건은 <사례 1> 사건과 같은 변호사가 진행하였으며, 같은 재판부에 담당되었다. <사례 2> 사건은 2023년 5월 16일 접수하여 2023년 6월 23일 청구가 인용되었고, 6월 26일 결정이 확정되었다.

IV. 소결

위의 분석 결과를 검토할 때, 다수의 위탁아동들은 친권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친권자의 조력을 받을 수 없어 행정처리상의 어려움, 친권자의 친권남용으로 인한 피해,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혼란 및 위축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아동들의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위탁아동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소는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위한 소송구조를 진행하였다. 본소가 본격적으로 관련 사건을 진행한 지 약 8년이 다 되어 가지만, 위의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직도 법원의 위탁아동에 대한 이해 부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위탁아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은 계속하여 제안되고 폐기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협의를 거쳐 만든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⁵⁾은 개정 추진 배경으로 미성년 자녀의 복리 강화를 강조하며,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하였다. 미성년인 위탁아동이 법정대리인 없이 직접 친권상실이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친권상실 선고 사건을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외에 사건본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도 관할한다고 하여 신속한 사건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에 대한 기대가 큰 법률안이었다. 그러나 제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 종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되었다.

지난해 정부는 아동정책 추진방안⁶⁾을 발표했는데,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이 포함되었다. 현재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은 양육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재판 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지해 앞으로는 시·군·구청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후견인 선임을 신청하도록 후견 필요 아동 발굴, 후견인 신청 등에 관한 구체적 절차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유기 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별도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후견인으로 자동 지정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5) 정부 발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2118198, (2022. 11. 10.) [임기만료폐기].

6)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제17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4. 13(목) 10:00, 서울청사)”, 국무총리비서실(2023. 4. 13.) 참조.

특히 위탁부모에게 법정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위탁부모가 후견인이 되지 않더라도 후견인 선임 전까지 아동 양육에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법정대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그 예시로 입·퇴원·수술 등 의료서비스 이용,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가족관계 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 권한 등을 검토하겠다고 제시하였다. 예시와 같이 위탁부모에게 법정대리권한이 부여된다면 많은 위탁가정이 겪고 있는 법과 제도로 인한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위와 같은 추진방안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위탁부모는 여전히 위탁아동에 대한 아무런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동을 위한 서류 1장을 발급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입양의 날을 맞이하여 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공개하며 가정위탁 활성화 방안을 함께 발표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제기되어 온 위탁부모의 양육 애로를 줄여주고자 법정대리인 제도를 정비해 위탁부모도 아동을 위한 통장 개설, 핸드폰 개통, 여권 발급 등을 불편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해 발표한 정책에 대한 추진은 없이 같은 정책을 또 다시 반복하여 발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정부가 제출했던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2차 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의견(2003. 1. 31.)에서는 “위탁양육이 여전히 제한적으로 시행됨을 우려하며, 특히 위탁양육가정에 대한 재정지원과 상담지원제도를 증대함으로써 위탁양육을 확장할 것” 등을 제시한 바 있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지만 위탁가정의 미성년후견 문제는 입법이나 재판과정에서나 별 진전이 없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위탁아동과 위탁부모의 몫이 되고 있다. 위탁아동의 복리를 위해 위탁가정에 대한 법원의 심도 있는 이해와 국회의 조속한 법률안 통과,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

권지연 상담위원

고맙습니다

2024년 5월 자원봉사자

• 야간상담을 해주신

방선영,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 님

•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정혜, 문은전, 유문숙, 문은희, 이병주 님

• 대학생 자원봉사

김시현, 남계목, 문세원, 이동희, 강태묵, 류제빈, 손예린, 이준호, 김현우, 차서연, 김도윤, 나단비, 신영혜, 이채운, 정민주, 전성희, 최서연, 최성은, 한승헌, 김나현, 이준영, 김미은, 김민재, 김연지, 문다은, 이지민, 한아름, 원서영, 이해원, 조희서, 하유지, 구가연, 임동현, 김유빈, 김지원, 여예령, 차진희, 최민제, 권순호, 김정은, 이지율, 정재경, 길가현, 전서영, 김용평, 노태연, 이재영, 장다원, 고유진, 김경민, 김민서, 김소영, 문정현, 서현진, 김창열, 박진희 님

후원 고맙습니다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이현혜, 천정환, 최민원 님

● 회원이 되시려면 ●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17-0003-1418-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02-780-5688 재무회계과

사실혼관계에서의 폭력도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본소로 상담위탁 보호처분

2021버1***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3회, 전화상담 4회, 교육강좌 3회
(화상회의 플랫폼 줌 (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3회, 전화상담 1회
부부상담 4회 등 18회

상담기간

2021. 10. 15.~ 2022. 4. 29.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3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이며 부부 사이에 자녀는 없다. 행위자는 전배우자와의 사이에 2녀(15세, 10세)가 있는데 행위자의 모친과 살고 있다. 전배우자가 자녀들을 보러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피해자가 속앓이를 하였고 부부간 갈등 원인이 되었다. 2021년 4월 사건당일 행위자는 피해자와 전혼 자녀문제로 시비하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는데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보호관찰 및 본소에 상담위탁하는 보호처분 결정을 하여 본소는 행위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다.

사건 이후 행위자의 전배우자는 규칙적으로 자녀들을 만나며 엄마로서의 역할만 하여 피해자와 갈등의 소지가 많

이 해소되었고, 이전에 부부 다툼의 원인이 되었던 딸의 태도도 변화하였다. 다만, 행위자의 모친은 피해자를 못마땅해하고 행위자와 부부로 사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인으로서 해결하여야 할 과제였다. 부부는 사실혼이면서 혼인신고 계획이 없어 향후 계획과 행위자의 모친 및 전혼 자녀와 피해자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숙고와 재정립을 상담의 한 목표로 하였다. 한편 일상에서의 갈등 문제를 점진한 결과, 행위자는 절주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행위자를 믿는 노력을 하기로 하여 휴대폰 확인이나 위치 확인 등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종결상담시 확인 결과, 피해자와 시모간 갈등은 여전하지만 행위자가 잘 조절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믿고 기다리는 상태이며 이 문제가 잘 정리되면 혼인신고를 하기로 부부는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그동안 행위자가 언어폭력을 포함하여 어떠한 폭력도 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사건당시 부부관계만족도는 0점, 현재는 10점 만점에 9점이라고 평가하였다. 좋아진 점은 행위자가 잘못된 점을 사과할 줄 알고, 절주하였으며, 거짓말을 하지 않아 싸움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 행위자는 사건당시 부부관계만족도는 10점 만점에 1~2점, 현재는 8점이라고 평가하고, 좋아진 점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것 특히 존중대화법을 실천한 것이라고 꼽았다. 향후 보완점으로 피해자는 아내가 알아야 할 일에 대하여 행위자가 다 이야기하여 주기를, 행위자는 피해자가 너무 많은 것을 알리고 하여 피곤하므로 자제하여 주기를 바랐다. 서로의 바라는 바를 알았으므로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하도록 노력하되, 못 미치는 경우 이해하고 수용할 것 까지를 당부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2021버2*** 재물손괴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아버지) 개별상담 6회, 전화상담 2회,
집단상담 2회(화상회의 플랫폼 줌
(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 교육강좌 2회(비대면 실시)
등 12회

상담기간

2021. 10. 15.~ 2022. 4. 29.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딸, 21세)의 아버지이다. 행위자는 배우자와 결혼한지 29년이 경과하였으며 부부 사이에 2녀가 있는데 피해자는 둘째 딸이다. 행위자는 2021년 6월 사건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배우자와 집 안일, 휴대폰 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는 과정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방으로 들어가자 휴대폰을 빼앗아 거실 바닥에 던져 그 효용을 해하는 재물손괴를 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 그리고 서울가정법

원에서 본소에 6개월간 상담위탁하는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행위자는 사건 이후 배우자 및 피해자와 화해하였으며 자신의 음주문제와 폭력대화 습관이 갈등을 빚어온 요인임을 인정하였다. 행위자는 1주일에 2~3회, 1회 음주량 1~2병이었던 음주습관을 1주일에 1회, 1회 1병으로 줄이고, 언어폭력을 중단하며 부드러운 말투로 대화하기를 실천과제로 정하였다. 또한 행위자는 자신의 성격이 고지식하고 고집이 세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수용하지 않는 점도 인식하게 되어 좀더 유연한 마음과 태도를 체화하기로 다짐하였다.

상담 중기에 그동안의 생활을 점검한 결과, 행위자는 절주 및 비폭력대화를 실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화법 및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를 10점 만점에 8점으로 평가하였다. 피해자는 공무원 시험 준비 중으로 행위자 및 가족들이 피해자를 배려하고 있어 충돌할 여지는 없었다. 행위자는 배우자 및 피해자와의 관계를 더 개선하기 위한 보완점으로 배우자와는 주말에 산책이나 등반 등 함께 하기, 피해자와는 시험을 마친 후 가족여행 등을 꼽았다. 행위자는 자녀들을 다른 집 자녀들과 비교하지 않으며,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볼 것을 다짐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024년 5월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진행 현황 〉

구분	프로그램명	날짜	참석인원	주제	강사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연중			본소 상담위원
	라오니모임	5/2	11명	과정집단	장희숙 교수 (성공회대학교사회복지학과)
		5/16	7명	안전계획 수립	
	음주문제 집단상담	5/24	3명	음주와 트라우마	김혜선 교수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5/31	3명	음주와 뇌	
가정폭력행위자 성행교정 프로그램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연중			본소 상담위원
	집단상담	5/1	12명	대화의 원리, 불통에서 소통으로	이서원 대표 (한국감정케어센터)
		5/8	11명	부부, 하향평준화의 법칙	
		5/22	11명	공감, 가족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끈	
		5/29	10명	가족화목의 비결, 메아리의 법칙	
	등지고실	5/8	32명	겉절이 화와 묵은지 화 : 火解하기 ② (+뿌리치료)	이서원 대표 (한국감정케어센터)
	음주문제 집단상담	5/24	12명	음주와 트라우마	김혜선 교수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5/31	13명	음주와 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5/30	25명	마음이란?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부모와 자녀 ① - 친자의 성, 친생자④

● 친생부인의 소는 자녀 또는 부모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Q 문 9 |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고 제 아이로 알았던 딸도 그 남자의 아이라고 아내가 고백하여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부정한 관계에 있던 남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와는 별도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는데, 판사가 피고가 잘못되었다며 다시 소장을 작성해서 내라고 했습니다. 아이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없는지요?

A 친생부인의 소의 피고는 자녀, 모 또는 부가 됩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 아이의 생부는 피고 적격이 없으므로 자녀 또는 아내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혼인 외 자녀를 출생신고 하려면(친모의 경우)

Q 문 10 | 남편의 폭력으로 2년 동안 집을 나와 지내다가 최근에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남편과 이혼 전 교제하였던 남

와 바로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니 전남편과 이혼 후 300일 내에 출생하였다는 이유로 전남편의 친자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전남편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될까봐 자녀의 출생신고를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생부인 재혼한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므로(민법 제844조 제2항), 이 기간에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친자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친생추정에 관한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부분은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4. 30. 2013헌마623결정). 이에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혼인 중 자녀로 출생신고 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소한 방법으로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 친생부인허가청구(동법 제854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자녀의 주소지 또는 출생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허가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심판서 등본 등을 첨부하여 재혼한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2024) 중에서



인터넷 상담

Q 50대 주부입니다. 저는 조현병으로, 남편은 틱장애와 우울증으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신병원에서 지냈는데,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퇴원하고 2년 넘게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부부입니다. 둘 다 특별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빠듯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활비가 부족해도 담배를 사달라고 떼를 쓰곤 해서 남편이 평소에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몇 달 전에 이러한 갈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남편이 제 뺨을 몇 차례 때렸고, 남편이 제 몸에 부당하게 손을 대면 경찰에 반드시 신고하라는 친정 언니의 조언을 떠올리며 112에 신고해서 남편은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각자 정신건강의 문제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서도 저는 하루 2갑 이상 담배를 피우고 있고, 남편은 매일 막걸리를 3병 이상 마시는 등 중독의 문제가 있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저는 잠을 자는 게 어려울 정도로 정신과 약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병원에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정폭력도 물론 심각한 문제이지만 저희 부부같이 정신건강 문제를 동반한 경우 상담소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두 분 모두 수십 년의 병원 생활로 사회와 단절되어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지만, 결혼생활을 하면서 보통의 부부들처럼 크고 작은 갈등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계신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남편의 폭력,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시네요. 가정폭력은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상습적이고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특성이 있기에, 친정 언니의 조언처럼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공권력이 개입되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폭력과 관련된 잘못된 생각이나 습관들이 교정되어 폭력적인 행동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폭력사건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의 절차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됨에 따라 상담위탁 보

호처분 결정을 받게 되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서 위탁 기간 동안 상담을 받게 됩니다. 상담의 목적은 남편이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폭력성행을 교정하여 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부부관계를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다양한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온 전문 상담위원들을 중심으로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학 교수, 심리상담가 등에 의해 개별상담 및 부부(가족)상담, 집단상담, 음주문제 상담, 교육강좌, 부부캠프 등으로 진행됩니다.

상담소에서 상담할 때 정신건강의 문제를 호소하시면 개별상담 등을 통하여 일상생활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선 두 분은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여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실천해 볼 내용으로, 남편은 매일 3병 이상 마시는 술을 적정 음주 수준으로 줄이고, 아내가 담배를 사달라고 할 때 비난하거나 추궁하는 말투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아내는 현재 하루 2갑 이상 피우는 담배를 점차 줄이는 노력을 하고, 현재 복용하고 있는 정신과 약을 같은 성분이지만 부작용이 적고 효능이 개선된 약으로 조정해 줄 것을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증상조절이 잘 안되고 수면문제도 생겨서 재발할 수 있으므로, 약을 제대로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상담소를 방문해 주시면 그 외 구체적인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차연실 상담위원

〈환상의 빛〉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출연 에스미 마키코, 아사노 타다노부, 타카시 타미오



유미코(에스미 마키코)는 동네에서 함께 자란 동갑내기 이쿠오(아사노 타다노부)와 결혼하여 아들 유이치를 얻었다. 유미코의 나날은 행복하고 따스하기만 하다. 그런데 어느 때와 다름없었던 어느 날 밤, 이쿠오가 기차에 치여 죽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진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유미코는 이웃의 맞선 제안을 받아들이고 나이토(타카시 타미오)와 재혼하여 작은 해변 마을로 이주한다. 하지만 여전히 이쿠오의 기억은 유미코를 집요하게 괴롭힌다.

〈아무도 모른다〉〈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바닷마을 다이어리〉〈어느 가족〉〈괴물〉 등 발표하는 작품마다 평단과 관객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첫 출발은 1995년 작 〈환상의 빛〉¹⁾이다. 가장 아름다운 데뷔작으로 꼽히는 이 작품은 엔딩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수수께끼를 품은 채 슬픔을 삭이며 삶에 충실하려 애쓰는 유미코의 내면을 조심스럽게 따라 간다.

유미코에게는 어린 시절 고향 시코쿠로 돌아가겠다는 집을 나선 할머니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 가족들이 아무리 만류해도 치매로 인해 기억이 파편화 되어버린 할머니에게는 고향의 부름만이 가장 강렬하게, 중요하게 남아 있을 뿐이다. 그리고 할머니의 소식은 알 수 없게 되었다. 그전에도 몇 번이나 가출했다가 경찰의 손에 끌려 인도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도 무연고 노인의 사체조차 발견되지 않는다. 할머니는 그야말로 느닷없이 종적을 감춰버렸다. 그래서 그건 한참이나 ‘죽음’이 아니라 ‘실종’으로 분류돼 있었다. 남은 이들을 불확실성의 지옥으로 몰아넣는 상황. 기억의 경증을 무리하게나마 따져보았을 때, 사라진 사람에게는 ‘이쪽’ 사람들 곁에 머무르는 걸 선택할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허무함만이 남았을 뿐이다.

그리고 이쿠오의 죽음은 유미코에게 있어 더 큰 트라우마로, 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남았다. 믿고 싶지 않지만, 심지어 그건 자살인 것 같다. 이쿠오는 폭우가 쏟아지던 한밤중, 기차가 달려오는 선로 중앙을 걷고 있었다고 한다. 유미코는 자신이 그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남편도 자신을 아낀 것이라 확신했다. 대체 왜? 유미코는 아무에게도 답을 얻을 수 있는 부질없는 질문을 스스로 되풀이하며 한없이 무너진다. 자살은 가장 지독한 의미에서의 ‘실종’이었다. 다른 이들은 이쿠오의 무책임한 선택에 대해 혀를 찼지만, 유미코는 그저 이쿠오의 마음의 풍경을 알고 싶을 뿐이다.

영화 말미에 이르러 비로소, 〈환상의 빛〉이라는 제목의 의미가 어렴풋하게 등장한다. 누군지 모르는 이의 장례식 행렬을 지켜보다 바닷가에서 홀로 오열하는 유미코를 찾으러 온 남편 나이토는 담백하게 말을 건넨다. “바다가 부르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전에는 배를 탔었는데, 홀로 바다 위에 있으면 저 멀리 아름다운 빛이 보였다. 반짝반짝 빛나면서 아버지를 끌어당겼대.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결국은 그런 것이다. 어떤 환상의 빛은 모두의 눈앞에 공평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그것이 환영에 불과하다는 걸 곧장 깨닫고 그 안으로 들어가길 거부하는 현실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기꺼이 환상에 이끌려 몸과 마음을 맡기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누군가가 싫어서, 무언가에 실망해서 … 같은 분명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저 죽음에 이끌리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는 것이다. 자책과 분노와 상실감에 오랫동안 짓눌렸던 유미코는, 나이토와의 바닷가에서의 대화 이후로 드디어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앞으로도 영원히 잔존하겠지만, 계절의 흐름에 따라 그 모습을 바꾸는 바다처럼, 마음은 과거에 고정되지 않고 현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유미코는 남편의 죽음에 어떤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그 깨달음이 유미코에게 진정한 ‘빛’으로 남을 것이다.

김용언 영화칼럼니스트

1) 현재 〈환상의 빛〉은 넷플릭스와 왓챠, 웨이브에서 스트리밍되고 있다.



컬트

세상을 경악시킨 집단 광기의 역사

맥스 커틀러, 케빈 콘리 지음
박중서 옮김

(주)을유문화사, 2024(초판1쇄)



신실하지 못한 천주교 신자로서 불경스럽게
도 사실 모든 종교의 일단은 컬트(cult)가 아닌
가 생각해 본다. 컬트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종교 또는 유사 종교 단체를 의미하며, 작은 종
교 단체라는 뜻도 있지만 주로 부정적인 의미
로 쓰이는데, 어떻게 보면 유대교에게 그리스
도교란 컬트가 아니었을까.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결혼식에서 신교도 학살을 벌였던 프랑
스 천주교나 미군정청조차 '나치와 KKK를 합
친 것 같다.'라고 평했다던, 한국 전쟁 전후 많
은 백색 테러 그리고 제주 4.3 학살의 실행자
였던 서북청년단의 우리나라 개신교는 컬트가
아니면 뭐라 이해해야 할까, 이해할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다.

왜 사람들은 컬트에 빠져드는가, 그 내부에
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컬트 지도
자와 그를 추종하는 이들은 대체 무슨 생각인
가? 총다운로드 수 5,500만 건을 기록한 미국
의 인기 팟캐스트를 토대로 한 이 책 『컬트』는
20세기 이후 세상을 경악하게 한 집단 광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찰스 맨슨부터 마셜 애
플화이트까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악명
높고 기괴한 컬트 집단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책의 뒤 표지의 문장이 먼저 인상적으로 다
가왔다.

“컬트는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 주는 그 속
성을 먹이로 삼는다. 여기서 말하는 속성이란
바로 우리의 소속되려는 열망, 삶 속에서 더 깊
은 의미를 찾으려는 열망, 신성한 목적을 지니
고 일상을 살고 싶은 열망을 뜻한다. 이런 속성
이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누구든지, 또
언제든지 저 무시무시한 컬트의 나락으로, 아
울러 엉뚱한 대의를 향한 무조건적인 헌신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 된다. 어쩌면 바
로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우리는 컬트에 대해
더 많이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 어쩌면 그 이야기가 워낙 엽기적이고도 불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명높은 집단들을
그렇게 굴러가게 만든 동력에 그저 감탄하는
것일 수도 있다.”

1969년의 찰스 맨슨과 패밀리부터 1990년
대에서 2000년대의 키스 라니에르와 벅시움,
크레도니아 음웨린데와 하느님의 십계명 회복
운동, 마셜 애플화이트와 천국문 등 9개의 유
명한 컬트에 관한 세세한 이 기록은 컬트가 바
로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혐오스럽고 끔찍한 내용이 적지 않아 중간
중간 쉬었다가 다시 읽게 되는 책이다.

청소년 임신에 대해 그들에게 학업의 기회
를 계속 주어야 한다는 학생인권조례의 항목을
두고 청소년 임신을 조장하는 것이기에 폐지해
야 한다고 선동하거나 동성애에 대한 밀도 끝
도 없는 혐오를 조장하는 일부 개신교가 이들
컬트에서 얼마나 멀리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교회의 도움이 절실해 보이는 이들이 교회를
홍보하는 전단지들 돌리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신성한 열망, 종교적 열정이 아니라 '엉뚱한 대
의를 향한 무조건적인 헌신'을 의심하는 나는
역시 신앙심이 부족한 얼치기 신자이기 때문인
가, 매번 생각한다.

이 책은 유명 팟캐스트 스튜디오의 설립자
인 맥스 커틀러가 자신의 지휘 아래 방송된 내
용을 뉴요커 에디터 출신인 케빈 콘리의 도움
으로 저술한 것이다. 팟캐스트 먼저, 저술 나중
이라는 책의 성립 자체가 최근 문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숙현 편집부장



2024년도 제1차 「경기도주거복지상담협의체」와 함께 파주시 금촌역 ‘찾아가는 상담’ 진행

본소는 5월 23일 파주시 금촌역에서 「경기도주거복지상담협의체」와 함께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상담을 원하는 파주시민들에게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주택금융, 주거비지원 등의 정보제공과 금융, 채무 및 개인파산 면책 등 상담, 이혼, 상속, 양육비 청구 등의 가정법률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였다. 본소에서는 조은경 상담위원, 고현희 상담위원이 참석하여 본소의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기관 소개와 가정법률상담을 하였다.

이번 행사를 함께 진행한 「경기도주거복지상담협의체」에는 GH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경기도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파주시 주거복지센터, GH 주택관리처,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등이 함께 하고 있다.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본소에서는 가정문제의 예방과 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김병후 원장(정신과전문의, 본소 이사)의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를 올해 총 4회에 걸쳐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30일에는 ‘마음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본소 8층 강당에서 두 번째 강의를 진행되었다.

강사는 생명체는 생존하기 위해 판단과 행위를 해야 하는데 그 판단의 주체는 마음으로 이는 생명체에만 존재하며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인간 삶의 행복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사는가로 결정되는데 감정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인간의 삶은 무한대로 발전하고 다양해질 것이므로 잘 살기 위해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며 강의를 마무리하였다.

참가자들은 감정이 가지는 능력과 감정의 표현이 있어야 관계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겠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다음 강의는 오는 8월22일 ‘과학으로 본 분노’를 주제로 실시될 예정이다.

• 문의1644-7077, www.lawhome.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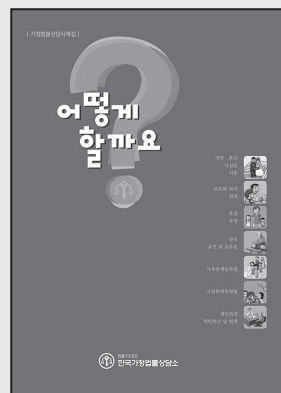
『어떻게 할까요』 개정 9판 발행

상담소에서 발간하고 있는 가정법률상담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개정 9판이 지난 5월 말 발행되었다.

1976년 초판 발행에 이어 가족법 개정의 현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특별판 발행을 포함해

개정 9판에 이르고 있는 『어떻게 할까요』는 그간 상담소를 찾은 내담자는 물론 전국업무협력기관(전 전국 지부), 법률임상실습에 참여한 실습생 등에게 보급되어 가족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법의 생활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어떻게 할까요』의 발간에 앞서 이미 상담소는 1958년 개소 2주년 기념사업으로 『백문백답 여성법률상담실기』를 펴냈는데 이는 개소 2년간의 상담과정에서 추려진 100가지의 사례를 문답식으로 엮은 것이었다. 이어 내용을 보완하여 『백문백답 가정법률상담실기』(1969), 『가정법률 상담실기: 300문 300답』(1972)을 발행하였으며, 이러한 역사가 1976년 『어떻게 할까요』로 이어져 개정 9판에 이르게 되었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진행 중이다.

5.16. 승의여자중학교 - 폭력예방교육

- 박상진 상담위원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전규선,
천다라, 박효원, 고현희, 김지은 상담위원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5월 20일 박성민 변호사(법무법인 HnL)의 “아동 최선의 이익실현을 위한 미혼모 등 한부모 양육비 청구 이행확보방안 연구”에 관한 자문을 화상

으로 진행하였다. 24일 양육비이행관리원 전주원 원장(한국건강가정진흥원 상임이사)과 이미정 본부장, 이동현 경영혁신본부 차장의 방문을 받고 양육비 소송구조의 확대와 면접교섭 지원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5월 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1조정)의 이혼등 사건을, 31일에는 가사2단독의 이혼등 사건을 조정하였다

곽배희 소장, 2024년 삼성호암상 시상식 참석

본소 곽배희 소장은 지난 5월 31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룸에서 열린 2024년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삼성호암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어 학술, 예술 및 사회 발전과 인류 복지 증진에 크게 공헌한 인사들을 포상하기 위하여 1990년에 설립, 제정한 것으로 삼성복지재단에 이어 호암재단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상당소는 2011년 사회봉사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4년 5월 상담통계

총 건수 4,246

법률상담 (3,460)

면접	전화	인터넷	서신	지상
1,017	2,336	102	3	2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600	49	137

• 인터넷 정보 이용 99.923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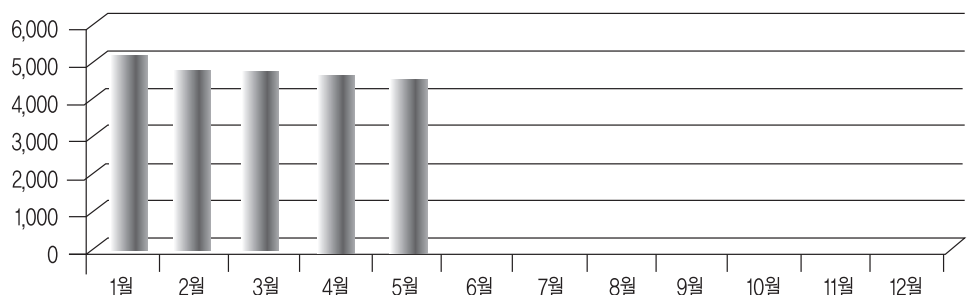
2024년 5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4,246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3,460건(81.5%), 화해조정 600건(14.1%), 소장 등 서류작성 49건(1.2%), 소송구조 137건(3.2%)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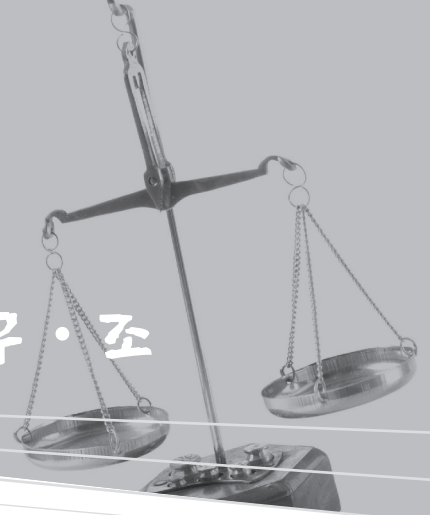
법률상담 3,460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4년 4월에 비해 이혼(20.4%→21.4%), 위자료·재산분할(6.3%→6.5%), 인지(1.2%→1.4%), 입양(1.2%→1.4%), 가족

관계등록부(2.7%→3.0%), 친양자(0.5%→0.6%), 성변경(1.1%→1.2%), 파양(0.2%→0.4%), 미성년후견(1.1%→1.4%), 성년후견(3.2%→3.3%), 가사기타(17.8%→20.6%)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3,460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017건(29.4%), 전화화상담 2,336건(67.5%), 인터넷상담 102건(2.9%), 서신상담 3건(0.1%), 지상상담 2건(0.1%)이었다.

2024년
월별
총건수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자녀를 학대한 모로부터 부모 친권자 변경

법률구조 2024-1-36

담당 : 천정환 변호사

사건명 : 친권자 변경

내용 : 청구인(남, 40대)와 상대방(여, 30대)는 2010. 10.경 협의이혼하면서 사건본인(여, 10대)의 친권자로 청구인을 지정하였으나 2021. 1.경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상대방은 2016. 12.경부터 2020. 1.경까지 사건본인을 신체적 및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위 범행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2023. 10.경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또한 상대방은 위 형이 확정되기 전인 2022. 6.경부터 2022. 11.경까지 사건본인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청구인은 재혼하여 자녀가 있고 택배 등의 일을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여서 사건본인은 현재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사건본인은 상대방과의 지속적인 분리를 원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친권자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친권자 변경을 해야 하는 사안이다.

결과 : 결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24. 4. 26.)

1.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위 사건은 대검찰청과 본소 간의 공익소송 관련 법률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첫 번째로 2023. 12. 28. 대전지방법검찰청 홍성지청에서 의뢰했던 사건이다.

자녀를 폭행한 부로부터 모로 친권자 변경

법률구조 2024-1-59

담당 : 송현승 변호사

사건명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내용 : 청구인(여, 50대)와 상대방(남, 50대)는 2018. 8.경 협의이혼하면서 사건본인1과 2(각 10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였다. 상대방은 2018년부터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본인의 뺨을 때렸고, 사건본인들의 용돈을 가로채거나 폭언을 일삼으며 가사노동을 강요하였다. 반복되는 폭언과 폭행에 공포심을 느낀 사건본인1이 2023. 10.경 청구인을 만나기 위해 간 버스터미널에서 상대방은 사건본인1의 뺨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주위의 신고로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으로 송치되었다. 이때부터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4. 5. 17.)

1.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사건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 위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고,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의 복리 및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실시한다.

3. 심판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남편의 가정폭력과 무책임한 태도로 인한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23-1-153

담당 : 박슬기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30대)는 피고(남, 20대)와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인 자녀들(여 2명, 2세)을 두고 혼인생활을 영위하였다. 피고는 혼인 생활 초기부터 잦은 음주로 인해 원고와 원고의 모친에게 폭언, 폭행 등 가정폭력을 자행하였다. 또한 피고는 경제적으로 무책임하여 원고가 어린 사건본인들을 홀로 양육하며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다. 결국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며 지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하루 200통에 가까운 문자와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보여서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를 받았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폭력적인 행위들과 무책임한 태도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4. 1. 25.)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 나.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비로 이 판결 선고일이 포함된 2024. 1.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 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3항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

1. 2024. 1.부터 2024. 7.까지
가. 피고는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이음누리)에서

전문위원의 참여 하에 위 센터에서 정하는 일정에 따라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을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이음누리)에 면접교섭 신청서를 접수한다.

나. 위 면접교섭센터에서 전문위원의 참여 하에 이루어지는 면접교섭 실시 이후의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상황, 일정을 존중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하여 정한다.

2. 2024. 8.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가. 일정
 - 1) 2024. 8.부터 2025. 7.까지
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11:00부터 17:00까지
 - 2) 2025. 8.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11:00부터 일요일 11:00까지(1박 2일)
나) 설과 추석 연휴기간: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 1박 2일
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 각 6박 7일
- 나. 방법
피고가 원고와 협의한 장소로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와서 피고의 거주지 또는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한 후 다시 원고와 협의한 장소로 다시 데려다 준다.
- 다. 협조의무
 - 1) 피고는 사건본인들을 만나기 늦어도 3일 전에 미리 면접교섭 가능 여부와 만날 시간, 장소 등을 원고와 협의한다.
 - 2) 원고는 피고의 면접교섭이 위와 같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위 면접교섭 일시와 방법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다. 위 조정·변경은 사건본인들의 의사,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넷째 월요일 오후 2시 ~ 4시
(6월 24일, 7월 22일, 8월 휴강)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024년 2월, 5월, 8월, 11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총 4회)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강의방법 및 장소 : 대면강의, 본소 8층 A 강의실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정	강 의 제 목
8월 22일	과학으로 본 분노
11월 21일	부부대화법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 관련 법률·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비혼모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24년 8월 중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 합니다.

등지고실 : 무료공개강좌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 시 :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 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진 행 : 이서원 대표(한국감정케어센터)
황순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일정 및 강의제목

일 정	강 의 제 목	강사
6월 12일	넌 화라면 멋지게 내자 : 火解하기③ (+표현치료)	이서원 대표 (한국감정케어센터)
7월 10일	삶에 대한 불만족과 관계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성격 특성 (+변증법적 행동치료)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 학과)
8월 7일	상처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트라우마 (+이야기 치료)	
9월 11일	무력감과 방향 상실을 초래하는 우울 (+인지행동치료)	
10월 16일	반복된 부정적 경험이 만들어 낸 불안 (+수용전념치료)	
11월 6일	생각과 감정, 그리고 지각의 비틀림을 가져오는 갈망 (+동기강화상담)	
12월 11일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자기표현, 자살 (+자기발견적 치료)	

교사들을 위한 법 교육 - 교원직무연수

가족법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 ▶ 연수과정명 : 법과 생활
- ▶ 과정구분 : 전문성향상 과정
- ▶ 연수기간 : 2025년 1월 14일(화) ~ 16일(목), 1일 5시간, 3일간
- ▶ 이수시간 : 15시간(1학점, 성적산출 안함)
- ▶ 연수대상 : 서울·전국 초·중·고 교원 20명(선착순 모집)
- ▶ 연수운영 방법 구분 :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양방향 원격연수
- ▶ 연수경비(1인당 자비 부담액) : 무료
- ▶ 교과과정
 - 가족법
가족법 변천사 및 법률구조사 / 혼인 관련 법률 /
이혼 관련 법률 / 부모·자녀 관련 법률 / 후견 관련 법률 /
상속·유언·유류분 관련 법률
 -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률
 - 아동복지법 관련 법률
 - 가정폭력 관련 법률
 - 폭력예방교육의 이론과 실제
 - 주택 임대차 관련 생활법률
 -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관련 법률

※ 교육일정 및 강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일시 ▶
2024년 8월 중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민임대 등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놀이치료」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 후원 : 삼성생명 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상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상상담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화상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
전화상담 및 문의 1644-7077

다문화가정을 위한 야간 영어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사전 예약 필수)
사전예약 및 문의 1644-7077

www.lawhome.or.kr